##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도 개선 방안





### 연구진

전성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윤승**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연구 요약

### 1. 연구 목적

- 2004년 광주 북구 도입 이래, 2011년 지자체 시행 의무화 이후 10여 년 동안 양적 발적에도 불구하고, 질적 제도 운영에 관한 논의 미흡
- 광주광역시청은 2011년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면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린 참여예산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필요
  -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1) 적정규모 및 사업유형, 2) 참여예산사업 심사 절차 및 선정 기준, 3) 참여예산위원회 역할, 4) 참여예산제도의 인식개선, 5)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 등의 제도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이에, 광주광역시의 맞춤형 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안 마련함으로써, 광주 광역시의 운영 내실화로 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향후 참여예산 제도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마련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시민참여예산제도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국 6개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비교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위해서 각 지자체 공무원과 인터뷰를 활용
- 광주광역시의 시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내제도 참여자들의 인터뷰, 참여예산위원회 인터뷰, 참여예산제도의 전문가의자문회의 및 광주광역시 공무원 및 참여예산위원들의 설문을 토대로 수행

### 3. 주요 연구 내용

### 1) 6대 광역시 제도 및 운영 비교 결과

- 전국 타 광역시와 제도 및 운영 비교를 통해서 현행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참여예산제도는 유사하게 제도설계가 되어있는데, 이는 서울시에서 추진한 참여예산제도의 고도화 내용을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권고하면서 유사한 사업유형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광역시별 참여예산 제도운영은 유사하나, 지원조직에 관한 운영은 지자체별 차이가 나타남
  - 제도 운영설계 측면에서, 참여주체(주민의 정의), 참여 범위 운영, 제안 사업의 유형 및 공모절차, 사업선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 기회, 민관 숙의ㆍ 공론화 과정의 제도운영, 참여예산운영 전담조직, 교육 및 홍보에서 큰 차이가 보이지 않음

### 2) 광주광역시의 참여예산 과정 상 개선사항 검토

- (예산규모) 광주광역시의 참여예산규모는 광역시 중의 하위권 규모에 속하고 주민참여예산비중이 높지 않으나, 그렇다고 참여예산규모를 확대 또는 축소 해야 한다는 진단을 하기 어려움
  - 참여예산 규모 적정성은 1) 참여예산 제안사업의 속성, 2) 지자체장의 의지, 3) 참여예산제도의 취지 및 목적 등과 같이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권 내에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
- (사업유형화) 광주광역시의 사업유형의 적정성 문제는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다른 '특·광역시·도' 주민참여예산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맥을 같이 하는데, 이는 광역시의 사무와 연계된 사항으로 볼 수 있음
  - 사업유형의 복잡함이 아니라 "광역시 주민참여예산에 어울리는 공간환경 개선 문제. 이슈 및 과제 문제. 당사자(청소년. 청년. 다문화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경로를 유영하는가"라는 문제

- 광주광역시 '시정참여형'은 지역의 공간환경개선(광역 차원의 공간 조성 /정비/개선 등과 관련된 제안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 경로라고 볼 수 있는데, 광주광역시는 여기에 '그린·스마트·펀시티 조성을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면서 지역의 이슈 및 과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 경로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
- (참여위원회 역할)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참여예산의 논의사항은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구체화하여 운영할 것인가에 주목
  - 참여예산제 과정에서 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은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 계획서가 어떻게 제안되느냐에 따라 역할이 의존적
  - 광역 사무와 어울리는 제안사업을 발굴하는 것과 제안사업을 구체화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안사업의 수준이 사업화하기에 부족한 수준일 경우에는 과정상의 제도설계가 필요
  - 참여예산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서와 전문가 등이 함께 숙의를 진행하면서 제안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숙의 과정은 많은 시간이 필요

⟨표 1⟩ 참여예산 단계별 참여예산위원회 역할

<u> </u>				
구분	주민의견 수렴	숙의/공론	확정/공개	
주요 행위자	예산편성-주민(시민) 예산집행-참여예산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	
지원 행위자	참여예산담당자	사업부서 담당자	예산담당자 지방의회	
제약 여건	주민의 사업계획서의 수준 단년도 사업의 제약조건 매년 새로운 사업 발굴 압박	사업부서와 제안사업의 정교화 짧은 숙의 및 공론화 기간 다부처 연계사업-1개 부서할당	주민의견과 제안사업의 우선 순위 간 다른 결과 시 협의	
참여위 역할	<ol> <li>광역시 사무에 어울리는 참여예산 사업유형의 사업발굴</li> <li>기존의 제안사업을 정교화하는 숙의/공론과정 내에서 사업발굴</li> <li>기존의 제안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역할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안사업 선정 역할 확대</li> </ol>			

- (참여예산제도의 인식) 공무원과 참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참여예산제도의 인식결과, 1) 공무원과 위원들 간 인식 격차, 2) 공무원 내 참여예산제도 담당자와 사업부서 간 인식의 격차가 참여예산 과정 상에서 나타남
  - 공무원과 참여위원 간의 인식은 공모접수단계, 숙의결정단계, 사업집행 단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참여예산제도를 이끌어 가는 공무 원의 입장과 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위원 간의 제도 운영 상의 차이로 볼 수 있고. 이는 광주광역시 뿐 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제도의 필요성 측면에서 공무원과 시민참여예산 위원 모두 긍정적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무원(2.77)들은 시민참여예산위원 (3.54)보다 긍정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공무원과 위원 들 간의 제도운영에 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4.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1) 타 광역시의 제도 및 운영을 비교, 2) 광주광역시 내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및 인터뷰를 통해서 1)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모델 구축을 위한 방향성 필요, 2) 현행 제도 내에서 실효적인 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
- (광주광역시 모델) 현재 광주광역시 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의 참여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광주광역시가 기초 구를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형 광역모델"의 운영방향 필요
  - 도시형 광역모델을 위한 1) 기초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 2) 기초자치 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광역 단위의 지원 방향
  - 광역단위로 주민참여예산 홍보를 실시하는 방안. 광역자치단체 예산으로 기초자치단체에 퍼실리테이터를 지워 방향

- 소규모사업의 경우 기초단체로, 대규모 사업의 경우 광역단체 소관
- (제도 활성화 방안) 광주광역시의 참여예산제도는 1) 공모접수 단계에서 투명성 제고를 통한 참여 확대, 2) 참여예산 운영 상의 실질적 예산제도와 연계를 통한 운영의 실효성 확보의 방안 필요
  - (공모접수단계) 주민들의 참여가 증가하지 않고, 주민들이 공모제안서의 내용이 추상적이며, 주민들의 역할이 제안서 제출 이후에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임. 따라서, 정보공개를 투명화하기 위한 1) big-data 활용한 기존 제안사업 정보 제공, 2)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주제 선정을 통해 시민참여의 효능감 제고 필요
  - (운영의 실효성 확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지자체의 참여예산제도는 형식적으로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을 연계해 놓은 제도 설계로 운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1) 참여예산제 운영의 목적에 "재정투명성"에 "재정책임성"을 추가하고, 2)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사기준을 신설 필요

## ■ Contents ■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3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3
2. 연구 목적4
3. 기대 효과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5
1. 연구 범위 및 방법5
제2장   참여예산의 개념 치 제도 현황
제1절 참여예산제도의 개념 및 기능
1. 참여예산의 개념9
제2절 참여예산 도입 및 전개 과정13
1. 제도 도입과 실시 과정
제3절 광역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과 참여예산제도19
1. 예산과정별 주민참여 내용
2. 지방예산 편성과정 20
3. 예산편성 일정과 참여예산제도의 역할 21
4. 참여예산 사업 분류22
제3장   참여예산제도 사례분석
제1절 사례분석 선정25
제2절 지자체 사례분석27
1. 대구광역시 참여예산제도27
2. 인천광역시 참여예산제도32
3. 시사점39

제4장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도 진단
제1절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도 개요45
제2절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도 주요 항목 진단56
1. 참여예산 적정규모 및 사업유형56
2. 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 및 참여 수준70
3. 참여예산제 관련자들의 인식조사78
제5장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제1절 광주형 시민참여예산제도 모델 발굴의 방향성91
1. 광주형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 명확화91
2. 광주형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단계적 제도 개선방향92
3. 도시형 광역모델의 운영방향93
제2절 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방안94
1. big-data 활용한 기존 제안사업 정보 제공94
2.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주제 선정95
3.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의 연계 확대 필요97
4. 그 외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98
[참고문헌] ·······101
[부록: 설문지]······103

## 표목차

〈丑	2-1>	참여예산제도 기본원칙	10
田〉	2-2>	참여예산의 정의	11
⟨丑	2-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정	15
⟨丑	2-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17
⟨丑	2-5>	2011년 행안부에 제시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표준안	18
⟨丑	2-6>	예산과정별 참여예산 내용	19
⟨丑	2-7>	참여예산 사업 분류	22
⟨丑	3-1>	참여예산제도 사례분석 비교 기준(2022년 기준)	25
⟨丑	3-2>	참여예산제도 사례분석을 위한 운영근거(2022년 운용 조례 기준)	26
田〉	3-3>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유형 및 사업규모(2022년)	28
⟨丑	3-4>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 및 사업건수 현황(최근 5년)	29
⟨丑	3-5>	인천광역시 참여예산 사업 유형 변화	34
⟨丑	3-6>	인천광역시 일반참여형 참여예산 현황(2022년 기준)	34
⟨丑	3-7>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형 참여예산 현황(2022년 기준)	36
⟨丑	3-8>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주요 활동(2022년 기준)	38
田〉	3-9>	인천광역시 예산학교 운영과정(2022년 기준)	39
田〉	3-10	〉예산과정별 참여예산 내용	40
⟨丑	4-1>	시민참여예산 추진 경과	45
田〉	4-2>	시민참여예산 유형별 사업(22년도)	47
⟨丑	4-3>	시민참여예산 유형별 사업(19년대비 20년도)	48
田〉	4-4>	유형별 시민참여예산 추진절차	49
〈丑	4-5>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실적(21년도)	50
⟨丑	4-6>	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구성(22년도)	50
⟨丑	4-7>	참여예산학교 일정(22년도)	52

〈표 4-8〉 참여예산학교 교육운영현황(21년도)         53
〈표 4-9〉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보장제도
〈표 4-10〉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활성화 제도
〈표 4-11〉 광역시의 참여예산 규모 변동 비교(최근 5년 추세)59
〈표 4-12〉 광역시의 참여예산 유형 비교61
〈표 4-13〉 광주광역시의 참여예산 규모 변화62
〈표 4-14〉 광주광역시의 참여예산 사업 규모 변화(기능별 분류)65
〈표 4-15〉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 유형별 사업 진단(22년도)68
〈표 4-16〉 조례에 명시된 참여예산위원회 규정(22년도)······71
〈표 4-17〉참여예산위원회 내 위원회 기능 및 역할(22년도)72
〈표 4-18〉 참여예산 단계별 참여예산위원회 역할73
〈표 4-19〉 참여예산 단계별 참여예산위원회 역할 ·······75
〈표 4-20〉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조례 기준)······76
〈표 4-21〉 설문 응답자의 특성
〈표 4-22〉 예산·사업 부서장의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의지 ······79
〈표 4-23〉시민 공모사업 계획서의 수준80
〈표 4-24〉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현재)81
〈표 4-25〉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미래)82
〈표 4-26〉 예산숙의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83
〈표 4-27〉 사업선정에 중요한 요소84
〈표 4-28〉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85
〈표 4-29〉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 사업유형의 적절성87
〈표 4-30〉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규모의 적절성88
〈표 5-1〉참여예산제도의 유형 ······92
$\langle \pm 5-2 \rangle$ 광주형 시민참여예산제도 모델 발굴을 위한 접근92
〈표 5-3〉도시형 광역단체 운영방향·····93
〈표 5-4〉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조례 기준)·····97
〈표 5-5〉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98

##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체계도	. 5
〈그림 2-1〉	전통적 주민참여와 주민참여예산제 형태	12
〈그림 2-2〉	예산편성 단계의 흐름도	20
〈그림 2-3〉	예산편성 일정과 주민참여예산 진행 일정(광역지자체)2	21
〈그림 4-1〉	광역시의 참여예산 규모1(최근 5년 추세)	57
〈그림 4-2〉	광역시의 참여예산 규모2(최근 5년 추세)	58
〈그림 4-3〉	광주광역시 참여예산 키워드 분석(최근 4년 추세)연	36
〈그림 4-4〉	광주광역시 참여예산 키워드 분석(최근 4년 추세)연	37
〈그림 5-1〉	대구광역시 예산사업 현황 데이터 활용 사례	94



#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제1장 연구 개요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004년 광주 북구 도입 이래, 2011년 지자체 시행 의무화 이후 10여 년 동안 양적 발적에도 불구하고, 질적 제도 운영에 관한 논의 미흡
  - 2011년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전 지방 자치단체로 확대되어, 각 지자체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제도를 운영
  - 특히, 2018년도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예산집행까지 확대하여, 주민참여 제안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과정 전반으로 확대
  - 서정섭(2019;2020)에서는 절차나 내용면에서 형식적·관주도·제한적 운영상태에서 벗어나, 주민중심, 넓은 예산범위 참여확대, 실질적 주민 참여 및 주도의 참여예산제 모델 필요성 제기
- 광주광역시청은 2011년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면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린 참여예산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필요
  -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1) 적정규모 및 사업유형, 2) 참여예산사업 심사 절차 및 선정 기준, 3) 참여예산위원회 역할, 4) 참여예산제도의 인식개선, 5)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 등의 제도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2. 연구 목적

- O 본 연구는 다음의 목적으로 수행
  - 10여년 이상의 운영해 온 전국의 광역시들은 운영상 유사한 문제점을 공유하되, 광역시의 관심 및 운영역량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광역시의 참여예산제도와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한편, 광주광역시 내부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당사자들의 인식분석을 토대로 광주광역시의 현황에 맞는 시민 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이에, 광주광역시의 맞춤형 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안 마련함으로써, 광주광역시의 운영 내실화로 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향후 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마련 목적

### 3. 기대 효과

- 광주광역시의 시민참여 확대 마련 및 운영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참여 예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운영계획에 반영
-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담당자들의 인식자료를 활용하여 향후 참여예산 제도의 교육 자료로 활용 기대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범위

- O (대상) 광주광역시 포함 전국 6개 광역시
- O (내용) 참여예산제도 과정

### 2) 연구방법

- O (문헌분석) 자료분석을 통한 현황 정리
- O (인터뷰)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 광주 참여예산담당자 7명, 참여예산 전문가 5인 등
- O (설문분석) 광주광역시 본청 및 소속 기초 관련 공무원 대상 설문

### 3) 연구분석의 틀

〈그림 1-1〉연구 체계도





# 참여예산의 개념 치 제도 현황

제1절 참여예산제도의 개념 및 기능

제2절 참여예산 도입 및 전개 과정

제3절 광역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과 참여예산제도

### 제2장 참여예산의 개념 치 제도 현황

### 제1절 참여예산제도의 개념 및 기능

### 1. 참여예산의 개념

- 참여예산(Participatory Budgeting: PB)의 기본원리는 브라질 뽀루뜨 알레그리시의 생활정치의 경험에서 얻은 결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 참여예산은 시민의회 선출 및 그들에 의한 우선순위 결정을 실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선순위 배문의 사회 정의실현 및 참여예산위원회에 의한 시민통제의 원칙(Y. Sintomer et al, 2008)
  - 보르뚜 알레그리 시의 사례에서는 노동자 및 시민사회조직 참여중심으로 SOC사업 등의 지역의 불균형한 지역개발 사업으로 투입되어 재원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
  - 브라질의 사례를 토대로 참여예산제도는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의 일환 중에서 혁신적인 참여제도로 '권한 있는 참여 거버넌스(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예시
  - 따라서, 뽀루뜨 알레그리시 사례에서의 참여예산제도는 관료중심의 예산 재원배분<sup>1)</sup>(우선순위)이 주민참여기구 중심의 합의·결정하는 제도로 변화로 정의(나중식, 2004: 466;서정섭 외 2018)
- O 참여예산은 재정의 운영 방향과(또는) 재원 할당에 일반 시민(non-elected citizens)의 참여의 허용(Sintomer et al, 2008: 168)

<sup>1) 1989</sup>년 3.2%, 1990년 10.0%, 1991년 16.3%, 1992년 17.0%, 1993년 14.5%, 1994년 17.0%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25%까지 증가하였다(나중식, 204:465; 서정섭 외 2018).

- 참여예산은 경험적 산물로 합의된 개념으로 공통된 범위와 속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참여과정이 기존의 예산참여과정 및 타 참여과정과 구별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포함한 정의가 필요(J. Paterson and M. Wagner(eds.), 2013: 10; 서정섭 외 2018)

〈표 2-1〉 참여예산제도 기본원칙

분류	내용
재정 및 예산의 관점	• 한정된 예산 내에서 자원배분
운영주체	• 지방정부 또는 선출제제 등의 행정권관한 분권화된 지구(district) - 대의민주주의 실시하는 기관
과정 주기성	• 예산주기와 같이 매면 반복되는 과정의 필요
참여행태	• 특정한 회의(meetings)/토론회(forums)의 틀 내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공적 숙의(Public Deliberation) 및 예산집행의 모니터링 포함
참여결과의 공개	• 주민참여예산은 산출물(output)이 공공의지에 반영되도록 설명책임성이 요구
Y. Cabannes (2004)	① 직접민주주의 vs. 공동체 기반의 간접민주주의 ② 지방정부 기반의 참여민주주의 vs. 공동체 기반의 참여민주주의 ③ 참여적 의사결정 과정의 주체가 누구인가 ④ 참여주체들에 의해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통제될 수 있는가 ⑤ 참여예산의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가 ⑥ 예산집행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감시가 인정 되는가 ⑦ 공식화와 제도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출처: 서정섭 외(2018)의 내용 정리

- 참여예산제도의 본질적 속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정책방향, 재원 배분 및 집행 과정의 모니터링을 포함한 재정활동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 하여 숙의과정을 통한 의사결정을 포함
- Y. Cabannes(2004)는 귀납적 접근을 토대로, 다양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참여예산제의 운영사례를 토대로 개념정의에 요구되는 7가지 기준을 제시
- 참여예산의 정의는 주체, 예산과정, 행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성

**〈표 2-2〉** 참여예산의 정의

학자	정의
Y.Sintomer et al	• 재정의 운영 방향과(또는) 재원 할당에 일반시민(non-elected citizens)의
(2008, 2013)	참여를 허용하는 것
B. Wample (2007)	• 시민들이 공적자원의 배분에 대하여 숙의와 협의를 하는 하나의 의사결정 과정
A. Marquetti et al	•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이 재정정책을 결정하는데 직접 참여할 권리를 갖는
(2009)	참여민주주의 유형
PB-Unit, M.Bassoli	• 지역주민이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 및 지출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 및
(2011)	그 이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곽채기 (2003)	• 예산편성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 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주민참여제도
임성일 외	• 예산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주민들을 예산이라는 광장에 참여하여 일정한
(2018)	영역에서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만들어 주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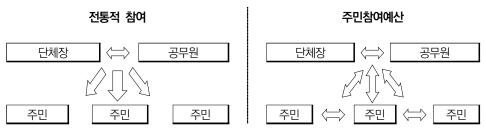
출처: 서정섭 외(2018;2019), 이미애(2019), 지방재정학회(2020) 재구성

### 2. 참여예산제도의 기능

- 행정관료 주도의 예산편성과 의회 중심의 예산심의가 야기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강재규·김상희, 2011: 271)
  - 행정관료 주도의 예산편성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관료가 중심이 되면서 주민들과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 심화
  - 주민의 대표성 없이 행정능률과 효율 위주의 예산행태로 민주성 훼손에 따른 국민들의 예산주권을 찾기 위한 목적
- 예산 과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과 투명성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오영민·신헌태, 2018: 27)
  - 정부가 독점하던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보장된다는 것은 다수의 지역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의 대응성 향상 가능

- 예산 집행과정에 대한 직접적 감시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 증대라는 효과
- 정부의 예산 활동에 대한 사후 감시가 아닌 사전 편성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이를 보임(윤성일·임동완, 2016: 41)
  - '주민감시제도'와 같은 타 제도는 예산의 불법 지출이나 낭비에 대한 사후적 감시로서 운용 행태에 대한 시정 요구나 예산 절약 방식에 대한 주민의 의사 표출 위주로 구성(류춘호, 2017: 17)
  - 참여예산 제도는 전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권한이양, 분권화, 공유화, 민주화 등을 핵심 가치로 한다는 특징을 지님(윤성 일·이동완, 2016: 41)

〈그림 2-1〉 전통적 주민참여와 주민참여예산제 형태



자료: Y. Sintomer 외(2013: 10); 서정섭 외(2018)

### 제2절 참여예산 도입 및 전개 과정

### 1. 제도 도입과 실시 과정<sup>2)</sup>

### 1) 참여예산 확산기: 2003년~2010년

- 참여예산제도가 제도권에서 논의되어 시행된 시기는 2003년으로 노무현정부 시기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주민의 참여와 연대로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재정·세제의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 검토
  - 1999년 인천시의 시민단체와 함께 실국별 예산정책토론회에서 예산 편성단계에서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을 계기로 도입 공론화가 되었고, 2002년 지방선거 시 민주노동당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본격 논의(곽채기, 2007; 이미애, 2018)
  - 2003년 행정자치부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작성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도입을 권장<sup>3)</sup>
  -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동구가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법제화하였는데, 당시에는 시민단체 중심의 소수의 시민이 연합하는 형태의 자발적, 자원봉사 형태로 전개
- 2005년 「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주민이 지방예산의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형태의 조항을 신설하여 지자체 장의 재량으로 운영을 결정

<sup>2)</sup> 한국지방재정학회(2020)에서는 참여예산시기를 2011년 의무시기를 기점으로 의무이전시기와 의무화이후로 구분

<sup>3)</sup>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주민들은 공개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각종 참여기제(인터넷 설문조사와 공청회, 간담회 등)를 활용하여 주민의견 수렴의 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보급 및 정착을 권고(행정자치부, 2003;이미애, 2018)

- 그 후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 통보(2006. 8),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모델(안) 제시(2010. 10) 등 행안부의 확산 조치 추진
  - 행정권고의 성격으로, 당시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행태는 지자체간 차이가 심했고 특히. 소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행정·재정운영이 아닌 형식적인 운영(한국지방재정학회, 2020)

#### 2) 참여예산 의무시행기: 2011년~현재

-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를 기초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지방의회의 예산안 첨부. 2) 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의 제도 정비
  - 2011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명시
  - 2014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예산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것을 명시
  - 2015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평가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 안전부 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
- 예산편성을 넘어서 계획. 집행. 결산. 환류의 전과정으로 확대하고.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공시4)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 행안부의 참여예산제 평가를 정교화함
  -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운용하고 있는 참여예산제도의 1) 지방의 민주성, 2) 창의성, 3) 고유성 등의 기준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제도 토착화 추진
  - 2018년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주민참여

<sup>4) 2013</sup>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공시(주민에게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는 조치)를 할 때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상황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공개

- 위원회 등의 주민참여예산 기구 설치를 명시하였고, 동년 지자체의 참여 예산제도 컨설팅을 추진하여 정착화에 기여
- 2020년 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활동이 부진한 지자체가 평균수준 이상으로 운영하여, 2020 참여예산제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에 관한 평가 실시

⟨표 2-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정

		(표 2 3) 구근급역에근세포의 포함되장
구분	연도	주요 내용
확산 시기	2003. 3	• 광주광역시 북구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최초 도입
	2003. 7	• 「2004년 지방예산편성지침」에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고함 - 광주 북구, 울산 동구 주민참여예산조례 도입
	2005. 9	• 지방재정법 개정(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조항 신설; 선택·권고 조항) 제39조(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할 수 있다.
	2006. 8	• 주민참여예산제도 표준조례(안) 통보(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2010.10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모델(안) 시달(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2011. 3	• 지방재정법 개정【제39조 의무사항으로 규정(2011. 9.9 시행)】
		제39조(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b>시행하여야</b> 한다.
		<ul> <li>지방재정법 개정 【제39조 주민 의견서 지방의회 제출(2014.9.9.시행)】</li> </ul>
의무화 이후	2014. 5	제39조(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5.28).
		• 지방재정법 개정【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 조항 신설(2015. 11.13 시행)】
	2015. 5	제39조(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018. 3	• 지방재정법 개정 (주민참여예산제도 범위 확대, 주민참여기구 설치 규정 신설 등 (2018. 6월 시행)]

구분	연도	주요 내용		
		제39조(지방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① 지방 예산편성 등 <b>예산과정</b> (의회예산 심의 제외)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 기구를 둘 수 있다.		
	2020. 3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전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신설(2020.3.3. 시행)]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b>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b>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하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b>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b>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하 생략)		
	기타	중앙정부: ①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제도 연구(2017년~) ② 지방자치단체 컨설팅(2018년~)      지방자치단체: 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관심 증가 ②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체모델 운영 단체 증가		

자료: 한국지방재정학회(2020) 재구성

### 2. 지방재정법령 및 운용조례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제39조)과 동법 시행령(제46조)에 근거
  - 동 법령에서는 지방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주민 참여기구 운영 등의 세부 실시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자율성 부여
  - 반면,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의무화,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운용 권장,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주민의견이 수렴된 주민의견서 첨부, 주민참여 예산 운용 평가의 강제규정

#### 〈표 2-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5.13. 2018. 3.27)

-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 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 기구'라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18. 3.27)
-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5.28, 2018, 3.27)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5. 5.13, 2017. 7.26, 2018. 3.27)
- ⑤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27) (전문 개정 2011. 8.4) (제목 개정 2018. 3.27)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

-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수 있다.(개정 2020. 3. 3)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 3. 3)
-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0. 3. 3) (제목개정 2020. 3. 3)

주: 2018.3.27의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2020.3.3.부로 개정됨

- 주민참여예산 운용조례는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후 2018년 성남시가 맨 마지막으로 제정
  - 현재는 우리나라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주민참여예산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운용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조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주민의 범위, 주민 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
  - 지방자치단체들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 하여 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 운용계획은 당해연도 2월~ 3월에 수립하여 4월~5월부터 연말까지 운용

⟨표 2-5⟩ 2011년 행안부에 제시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표준안

78	모델안 비교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 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구연구 단기) 제6조(운영계회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원 기타 부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제3절 광역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과 참여예산제도

### 1. 예산과정별 주민참여 내용

- 참여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주민들이 참여가 주가 되고, 동시에 예산집행 모니터링과 결산 및 사후적인 사업평가 등도 포함
  - 법령과 조례는 예산편성 단계 외에 집행·결산·평가 단계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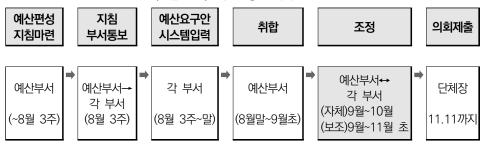
〈표 2-6〉 예산과정별 참여예산 내용

분류	유형	월	내용		
	준비단계	1월-2월	• 운영계획 수립·승인		
	참여접수	3월-4월	• 공모사업 접수		
	심의단계	4월-6월	• 사업타당성 검토		
	심의단계	6월-8월	• 사업심사		
	결정단계	8월	• 사업선정(총회개최)		
예산편성	반영단계	9월-11월	• 선정사업 예산반영		
	참여확대	2의 E의	. 구()에() 디어게하다 되셔드() O()		
	참여확대	3월-5월	• 참여예산 사업계획서 컨설팅단 운영		
	참여확대	7월-8월	• 23년도 시전체 예산편성방향 설문		
	참여확대	8월	• 참여예산편성 우선순위 설문		
	참여확대	9월-10월	• 23년도 시전체 예산 방향 분과위원회 개최		
예산집행	참여확대	7월,11월	• 참여예산 진행 및 부정관련 모니터링 실시		
	참여확대	상시	•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		
결산평가	참여확대	12월	• 참여예산 성과평가 토론회 개최		
(성과평가)	참여확대	11월	• 기초 참여예산제 평가		
	역량강화	상시	• 예산학교 운영		

### 2. 지방예산 편성과정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각 부서에 통보되는 예산편성지침은 대략 8월 말에 마련하여 각 사업부서로 통보됨
  - 행정안전부가 시달하는 예산편성 매뉴얼과 지방자치단체 지침
  - 예산편성 방향 및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에 부문별 우선순위 및 집중 투자 방향 등에 대한 주민설문 실시, 6월~7월 사이에 이루어지며, 주민설문 결과를 참고하여 8월 중순 경 예산편성지침 마련
- 사업부서는 9월 초까지 예산요구서를 예산부서에 제출하며 예산부서와 사업 부서의 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작성하고, 기한(광역자치단체 11.11) 내에 의회에 제출
  - 이 기간 중에 주민들은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
  - 전체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 기간으로 대표자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사업부서의 예산요구서 혹은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심의 및 주민의견서 작성 등의 형태로 참여
  - 주민제안사업 형태의 주민참여(주민공모 사업, 공모사업 외 주민제안 사업이나 자치계획형 사업 등)은 3월부터 주민제안을 받아 사업심사는 6월에 시작

#### 〈그림 2-2〉 예산편성 단계의 흐름도



주: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각 시기는 다소 다를 수 있음, 음영부분이 참여예산 운영

#### 3. 예산편성 일정과 참여예산제도의 역할

- 예산편성과정 시기별로 참여예산제도의 역할은 1) 의견제시, 2) 예산심의, 3) 사업제안의 역할로 구분
  - 의견제시 역할은 주민설문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방향 및 재정운용 전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주민설문은 7월~8월에 실시되고 8월 말 예산편성지침의 예산편성 방향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결과를 공개
  - 예산심의 역할은 광역시 전체예산에 대한 각 부서의 예산요구를 바탕으로 검토·심의·조정의 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광역시에서는 주민 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의견수렴 방식을 따름
  - 사업제안의 역할은 주민제안사업은 5월~6월에 시작되어 각 부서의 모든 예산사업들이 예산부서에서 취합되는 9월 초 경에 완료되고, 다양한 참여 절차를 통해 사업이 심의되고 우선순위가 결정
  - 집행 모니터링 단계에서의 주민참여는 현재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 여부는 확인 필요

〈그림 2-3〉 예산편성 일정과 주민참여예산 진행 일정(광역지자체)

#### 예산편성 일정 예산편성 예산요구안 지침 취합 의회제출 조정 지침마련 부서통보 시스템입력 예산부서→ 예산부서↔각 부서 예산부서 각 부서 예산부서 단체장 각 부서 (자체)9월~10월 (~8월 3주) (8월 3주) (8월 3주~말) (보조)9월~11월 초 11.11까지 (8월말~9월초) 주: 음영처리 된 부분은 전체 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간임 현행 참여예산 일정과 구조 (예산편성방향) 의견제시 (주민설문 반영) (예산요구서 및 예산심의 예산(안) 심의〉 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위원별 의견수렴 〈사업제안〉 사업제안 (주민사업제안·공모)

주: 그 밖에 예산집행단계의 집행모니터링, 사업완료 후의 결산참여, 사업평가 등의 역할이 있을 수 있음 출처: 서정섭 외(2019: 60)를 광역지자체에 맞게 재조정

### 4. 참여예산 사업 분류

O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여 방법, 수준 및 범위를 고려하여 참여 예산방식에 따라 공모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자치계획형 사업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국지방재정학회, 2020)

**〈표 2-7〉** 참여예산 사업 분류

공모 사업	주민제안 사업	일반참여예산 사업	자치계획형 사업
에 설정하여 주민 공모 실시	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사업 우선순위 등 의견 을 제시하나, 실질적 우 선순위 결정권한은 자치 단체가 가짐      이상의 2가지 요건 중 하	이 아닌 일반사업에 대해 주민참여 절치를 거치도록 하는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설정  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세부사업별)  이상의 2가지 요건을 모	업 도출 및 우선순위 결 정을 통해 예산에 반영
주민참여예산기구 제안	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	대해 주민참여 절차를	부여하면 읍·면·동별 지역회의에서 사업 발 굴 및 우선순위 결정 * 주민세의 전부 혹은 일 부를 읍·면·동에 배분

출처: 서정섭 외(2017: 99) 및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참조



# 참여예산제도 사례분석

제1절 사례분석 선정 제2절 지자체 사례분석

# 제3장 참여예산제도 사례분석

# 제1절 사례분석 선정

- 참여예산제도의 제36조와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참여예산제도의 범위와 제도 운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음
  - 법 제36조 제2항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 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 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라 명시하여, 지자체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외의 기구를 둘 수 있음
- 본 연구의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6개 광역시의 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를 2022년도 운영계획 자료를 비교하여 선정
  - 2011년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의 기준으로 6개 광역시 구분5)
  - 주민참여예산의 범위가 주민의 공모사업에 한정한 경우와 시정 전체 참여 사업으로 확대한 경우로 구분(이미애, 2018)

**〈표 3-1〉**참여예산제도 사례분석 비교 기준(2022년 기준)

구분		참여의 범위			
		참여예산 사업에 한정	시정 사업 포함		
2011년 표준조례안	모델1	울산			
	모델2				
#C#91C	모델3	광주,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출처: 이미애(2018) 재구성

<sup>5)</sup> 제1유형은 위원회 설치 임의규정으로 주민참여에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의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맡긴 형태. 제2유형은 위원회 설치 의무규정)으로 위원회의 설치를 조례에 명시하되 연구회, 협의회 등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긴 형태. 제3유형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 설치 상세규정에 관한 명시 및 위원회의 설치의무화 및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를 상세하게 규정한 형태(행정안전부, 2010; 이미애, 2018)

○ 6개 광역시 조례 검토 결과, 광주광역시와 같은 모델3 유형의 1) 참여예산 사업에 한정된 인천광역시와 2) 시정 사업 포함한 대구광역시를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실시

〈표 3-2〉 참여예산제도 사례분석을 위한 운영근거(2022년 운용 조례 기준)

광역시	조례명	운영기구 규정	참여의 범위
광주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의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의견제출) 시민참여운영 계획에 따라
부산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의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임의]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연구회, 협의회 등	(주민의 권리) 조례가 정한 범위 내
대구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의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임의]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해당 연도의 예산과 기금
인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의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민관협의회 [임의]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의견제출) 조례가 정한 범위 내
대전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의무] 예산참여주민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임의]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해당 연도의 예산과 기금
울산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의견제출) 주민참여운영 계획에 따라

출처: 6개 광역시 조례를 토대로 저자 작성

O 분석방법은 1) 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운영조례」, 「운영계획」을 토대로 운영 하는 제도 틀을 확인하고, 2)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광역시의 담당 공무원 및 해당 광역시 주민참여위원의 인터뷰를 토대로 수행

# 제2절 지자체 사례분석

#### 1. 대구광역시 참여예산제도

#### 1) 일반현황

- 대구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민선 6기가 들어선 2015년 부터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하여 본격화되었음
  - 대구광역시는 2011년에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 및 「지방재정법」의 의무화 규정에 의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비판을 받으며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었음(대구광역시, 2019, p.23)
  - 2015년 이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민관협력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민 대상 맞춤형 예산교육 도입 등을 통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하고 예산에 반영하기 시작하였음
- 대구광역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기관 선정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최우수 단체로 선정됨
  - 대구광역시는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확장하여 왔으며 2015년 57억이던 예산규모가 2022년 190억으로 양적으로 확장되어 왔고 사업내용도 다양해지는 등 질적으로도 성장하여 왔음
  - 대구광역시는 주민 참여 확대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주민참여 예산위원을 10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지원협의회 운영, 시민투표실시,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주민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음
  - 2021년에는 청년서포터즈단 신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공개모집 확대 및 사회적 약자 위촉 확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실시간 쌍방향 교육 및 화상회의시스템, 청각 장애인 접근가능 온라인 콘텐츠, 빅데이터 분석 등을 시도하였음

#### 2) 주민참여예산 유형

- 2022년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은 시정참여형, 청년참여형, 구군참여형, 읍면동참여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있음
  -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의 유형은 2020년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지역회의형으로 구성되었으나 사업명 이해의 어려움. 청년참여 강화 등의 이유로 사업유형이 개편되어 2021년부터 4가지 유형으로 개편되었음
  - 2022년의 경우 청년참여 강화를 위해 청년분과 한도액을 10억에서 20억 으로 상향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있음

구 분		사업규모	사업내용
	합계	190억 원	
71CH	시정참여형	90억 원	광역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혹은 2개 이상 구·군의 시민편익 사업     일반사업(3억 원 이하) 행사·프로그램사업(5천만 원 이하)
광역	청년참여형	20억 원	청년 일자리, 창업, 교육, 창작활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지원     일반사업(3억 원 이하) 행사·프로그램사업(5천만 원 이하)
구군	구군참여형 (8개)	40억 원 (각 5억 원)	<ul> <li>구군 소관사무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li> <li>일반사업(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행사·프로그램 사업(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li> </ul>
읍면동	읍면동참여형 (142개)	40억 원 (각 28백만 원)	•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 한도액 제한 없음

⟨표 3-3⟩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유형 및 사업규모(2022년)

출처: 대구광역시 2022년 주민참여예산 개선 및 운영계획(p.11)

- 시정참여형의 경우 시 소관 사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주민이 직접 제안 하여 적격사업으로 판단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종 투표를 통해 예산에 반영하며 2022년 9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음
- 청년참여형은 청년 일자리,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지원 사업과 관련된 유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청년분과 위원회 주도로 사업을

- 심사하여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되며 2022년 사업규모는 20억임
- 구군참여형 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소규모 생활밀착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사업선정 자율권을 부여하고 4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 읍면동참여형 사업은 대구광역시 142개 읍·면·동의 풀뿌리 주민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소규모 모임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하고자 하는 유형으로 사업규모는 2022년 40억 원임
-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예산규모는 2018년 130억에서 2022년 190억으로 양적규모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줌
  - 실제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증가하던 예산편성액의 경우 2019년 이후 그 증가액 및 증가율의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2021년에는 예산편성액이 전년 대비 1억 여원(전년 대비 0.6%)감소하였다가 2022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섬
  - 다만, 이러한 감소는 외부 환경(코로나-19 등)의 충격으로 인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정상적 운영 어려움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예산 규모의 증가는 공모 심사를 거쳐 예산에 반영된 사업건 수의 증가(2021년 제외)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사업측면에서 다양화되고 있으며 예산 규모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3-4〉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 및 사업건수 현황(최근 5년)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목표액(억)	130	140	150	180	190
예산편성(억)	130	138	149	148	178
증가액(억)	35	8	11	-1	30
증기율(%)	36.8	6.1	7.9	-0.6	20.2
사업건수	325	378	443	398	562

출처: 대구광역시 2022년 주민참여예산 개선 및 운영계획(p.1)을 참고하여 저자가 재구성

#### 3) 주민참여예산 절차

-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의 예산편성 절차는 유형별로 세부 절차에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주민제안을 통한 사업공모, 부서분류 및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사업선정(총회 및 투표), 예산편성 단계로 진행됨
  -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의 각 유형에서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등의 다양한 통로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을 위한 주민제안을 공개 모집함
  - 주민에 의해 공모된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법령, 조례에 타당한지, 사업에 실현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시 또는 구·군에 속하는 사무인지를 검토하여 적격사업을 선정하고 구·군사업의 경우 구·군참여형 사업으로 이관함
  - 이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사업부서 검토의견을 참고하고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거쳐 최종 적격사업을 선정함
  - 본심사에서는 제안자의 사업설명을 청취하고 참여예산위원과, 제안자, 사업부서 사이에 숙의 토론을 거쳐 평가지표에 따른 최종평가를 거쳐 분과별 한도액 기준 130% 범위 내 고득점 사업 순으로 총회 선정사업을 선정함
  - 총회에서는 최종 예산 반영사업 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 70%. 일반시민 30%의 반영비율로 최종 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며 예산 안에 반영하여 시의회에 제출함
  - 다만, 읍면동참여형 사업의 경우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공모 실시 및 총회에서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최종 사업선정 결과를 시에 제출하면 구·군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및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승인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됨(읍·면·동 → 군·구 → 시)

## 4) 주민참여예산 운영기구

○ 대구광역시는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및 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위워회. 분과위워회. 우영위워회. 주민참여예산지워협의회. 예산아카데미.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단, 공감포럼, 청년서포터즈 등을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와 비교하여 의미있는 기구를 살펴봄

- (주민참여지원협의회) 대구광역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지원협의회를 구성,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제시와 위원회 활동 지원의 역할
  - 조례 제20조에 근거한 주민참여지원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등 지원, 사업공모 및 투표 시 홍보 지원, 총회 및 성과평가 토론회 등 주요 행사를 지원하고 있음
  - 협의회는 협의회장(당연직) 및 12명의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 참여예산팀장이 간사로 참여함
- (예산아카데미) 대구광역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 및 과정별 체계적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 조례 제21조에 근거한 대구광역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에 대해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 등의 예산실무,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교육 기본과정을 이수 하여야 하며 일반시민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기본교육, 심화교육, 읍면동 참여형사업, 예산편성 및 운영과정, 주민참여 예산사업신청서 작성법(이상 상시교육) 및 찾아가는 예산학교 등 12개 이상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사이버 예산아카데미를 확대하여 상시교육의 경우 이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제공
- (공감포럼) 대구광역시는 제안사업 중 채택되지 않은 우수한 시민 아이디어를 사장시키지 않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감포럼을 운영하고 있음
  - 공감포럼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포함한 주민제안사업 중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대해 일반 재정예산 사업으로 사업화하고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운영됨

- 소관 사업부서 공무원의 1차 실무검토를 거쳐 전문가, 참여예산위원, 공무원이 참여한 공감포럼을 개최하여 제안자의 제안취지 및 사업부서 검토의견을 청취 후 포럼 참여자 간 토론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 결정함
- (청년서포터즈) 대구광역시는 청년들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청년서포터즈단을 구성하여 운영중임
  - 대구 및 경북 소재 대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단을 구성하고 주민참여예산 회의 및 행사 참여, 홍보 콘텐츠 제작, 청년참여형 사업 발굴 및 제안

#### 2. 인천광역시 참여예산제도

#### 1) 일반현황

- 인천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1999년부터 인천광역시와 시민단체가 「실국별 예산정책토론회」를 통해 예산편성에 인천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왔으며. 2012년 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2013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 인천광역시는 공청회를 통한 주민참여, 분야별 토론회 개최 및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왔음(이미애, 2018)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처광역시는 2011년 조례 및 참여예산모델 개발을 위한 제도연구 시작하였으며 2012년 조례 전면개정, 2013년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시작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음(6)

<sup>6)</sup>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budget/BUD010101, 접속 일자: 2022년 7월1일.

- 인천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은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운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 절차와 방식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참고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주민참여의 범위를 모든 예산과정 (예산편성, 주요사업, 집행, 평가)으로 확대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의 2022년 확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 건수는 397건이며 예산 반영 규모는 485억 원으로 양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 확정된 사업 건수는 2020년 247건, 2021년 286건, 2022년 397건이었음
  - 예산편성액은 2019년 199억 원, 2020년 297억 원, 2021년 401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의 유형

- 인천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은 2021년 5개 유형이었으나 2022년 3개 사업 유형(참여형, 협치형, 주민자치회형)으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음
  - '참여형'은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편익을 위한 시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일반시민 제안사업으로 공간환경개선의 문제해결과 주로 관련이 있으며, 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진 제안사업을 총회와 주민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함
  - '협치형'은 사업제안·발굴 등 예산 과정에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특정 지역 이슈에 대해 의제별 협치단에서 발굴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서 심의 후 주민 투표로 결정함
  - '주민자치회형'은 읍·면·동 단위의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주도로 의제를 발굴하고 우선순위 선정하여 주민참여위원회 에서 예산 배정여부를 최종 결정함

⟨표 3-5⟩ 인천광역시 참여예산 사업 유형 변화

	7	기존(~2020)			현재(2021~)		
참여형	일반참여형	• 광역도시 문제 해결 및 시민 편익을 위한 사업					
	시정참여형	• 민관협치기구, 각종 온라인 매체,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시민 제안 사업		참여형	•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 편익을 위한 일반시민 제안 공모사업		
	지역참여형	• 군·구 단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협치형	시정협치형	<ul> <li>지역별, 계층별, 시대적 요구 시항 반영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발굴</li> <li>민관 협치를 통한 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 제안</li> </ul>	•	협치형	사업과정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     각종 경로의 시민제안에 대한 민관숙의 완료 사업     사업제안 과정부터 민관이 공동 참여하여 특정의제사업 발굴		
	동 협치형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     주민자치회가 의제발굴 및 순위선정 주도		주민자치회형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지원 사업     주민자치회 운영 등 주민 숙의 과정을 통한 사업		

출처: 2021년,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 〈표 3-6〉 인천광역시 일반참여형 참여예산 현황(2022년 기준)

구분	내용
기획재정분과	• 데이터 혁신 및 도시 내 스마트시설과 관련된 사업 총 7개 • '시민건강 지원 서비스', '주민 애로 해결형 빅데이터 분석', '청소년 참여예산 교육' 등이 이에 해당하며, 총 179.9억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소통행정분과	• 마을 공동체 정비 및 주민자치와 관련된 사업 총 7개 •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 '마을계획 수립 지원',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하며, 총 26.9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재난안전분과	• 재난 대비 관련 사업 총 2개 • '재난 소화전 안전가드 설치', '어린이 안전가방 네임택 지원'이 이에 해당하며, 총 6.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경제산업분과	• 반려견 및 야생동물 관리, 농·축산업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사업 총 8개 • '자투리 텃밭 조성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교육' 등이 이에 해당하며 총 9.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해양항공분과	• 해양환경 관리 및 관련 시설 확충과 관련된 사업 총 6개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바다역 야간경관등 설치', '인천국제공항 주변 주민운동아카 이빙' 등이 이에 해당하며 총 13.4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구분	내용
복지보건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구축 및 시민건강과 관련된 사업 총 15개     '거리흡연자 개선', '장애가족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무료와이파이 설치' 등이 이에 해당하며 총 20.4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여성가족분과	• 여성 및 아동과 관련된 사업 총 8개 • '시설아동 건강검진 비용', '폭력피해 이주여성 긴급지원비 지원', '청소년 영화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총 11.1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문화관광분과	지역 내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총 9개     '길거리 버스커 지원 문화예술사업', '독서치료' '악기연주 경연대회' 등이 이에 해당하며 총 9.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환경녹지분과	• 환경보호 및 녹지조성을 위한 사업 총 8개 • '공원 조성 사업', '환경교육', '체육시설 기능보강' 등이 이에 해당하며 26.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교통분과	교통관련 시설 정비 및 교육을 위한 사업 총 5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버스승강장 편의시설물 설치' 등이 이에 해당하며 총 20억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도시건설분과	• '바닥 LED, 태양광 가로등 설치', '초보자전거교실운영'이 이에 해당하며 총 6억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IFEZ 분과	• '스마트신호등 설치', '산책로 조성사업'이 이에 해당하며 총 12억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 참여형 사업은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편익을 위한 사업들로, 일반시민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성
  - 해당 사업에는 기획재정, 시민안전, 일자리 및 복지, 여성가족, 환경 등 시정 전 분야가 포함됨
  - 따라서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우선되며, 사업의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특정 집단이 아닌 시민 일반에 보편적으로 분배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는 특징을 지님
  - 행사성 사업은 지양되며, 단순 금품 제공 또는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혜적 사업 역시 참여형 사업에서 배제된다는 특징을 지님
- 협치형 사업은 사업제안과 발굴 등 예산 과정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구성
  - 해당 사업에는 협치단을 구성하여 민간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이

- 해당되는데, 이때 협치단은 기존의 분야별 정책 발굴기구(일자리위원회, 청년네트워크 등)를 활용하거나 새롭게 협치단을 구성하게 됨
- 2022년 기준 총 64개의 사업이 협치형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취약노인 맞춤형 영양관리 및 급식지원', '민관협치 역량강화교육 운영', '지역아동 센터 해충 방역 지원'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하며 총 273.6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 주민자치회형 사업은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구성
  - 해당 사업에는 아전이나 육아, 복지, 공동체 강화 등 주민의 일상적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의제가 포함되며 주민자치회 활성화.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 역시 해당

⟨표 3-7⟩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형 참여예산 현황(2022년 기준)

(# 0 1/ EE844   E41/148 E41/1E E8(2022E 1/E)					
구분	내용				
중구 (18개 사업)	•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만들기', '우리동네 벽화 그리기', '환경교육', '마을 꽃길 조성 사업' 등 생활과 밀접한 공간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이 이에 해당. 총 2.6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동구 (26개 사업)	• '지역 축제', '스마트폰 배우기'. '기초영어회화'등 문화생활 및 교육을 위한 사업이 이에 해당. 총 3.4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미추홀구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언덕길 휴식의자 설치', '숲 축제', '육교 조명 설치사업' 등의				
(38개 사업)	사업이 이에 해당. 총 4.9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연수구	• '벽화그리기', '길거리 문화공연', '계단설치' 등 문화생활 및 지역 내 편의시설 증진을				
(20개 사업)	위한 사업이 이에 해당. 총 2.3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남동구	• '마을신문 발간',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 '소규모 꽃길 조성' 등 문화생활 및 지역 내				
(37개 사업)	환경을 위한 사업 등이 이에 해당. 총 4.9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부평구	• '주민자치대학', '세계요리 체험', '밤길 조성' 등 문화생활 및 지역 내 편의시설 증진을				
(34개 사업)	위한 사업 등이 이에 해당. 총 3.9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계양구	• '나눔장터', '안심벨 설치', '재난안전 체험교육', '이웃 빵 나눔' 등의 사업이 이에 해당.				
(54개 사업)	총 4.1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서구	•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어린이 공원 화단조성' 등 지역 활동을 촉진하고 환경여건을				
(20개 사업)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이 이에 해당. 총 4.1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옹진군 (7개 사업)	• '농수특산물 홍보사업', '고유먹거리 발굴', '찾아가는 이미용실', '공구도서관 설치' 등 지역 홍보와 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사업이 이에 해당. 총 1.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 3) 주민참여예산 추진절차

- 참여형 사업의 경우 주민의 제안사업이 접수(사업 공모)되면 사업부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쳐 2차례의 심사와 재정컨설팅을 거쳐 주민투표에 상정됨
  - 주민투표는 일반시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
  - 일반시민, 시장, 시의원,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이 참여하는 총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발표 후 시민 의견 수렴. 그 후 예산 안을 편성하고 시의회의 의결 후 확정
- 협치형 사업의 경우 의제를 공모한 후 선정된 의제별로 협치단을 구성하고 협치단 회의를 통해 제안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함
  - 제안서를 대상으로 재정컨설팅을 실시하며 예산담당관은 편성 검토의견을 제시한 뒤 최종 제안서가 확정됨
  -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는 제안된 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주민투표 실시함
  -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최종 선정된 사업을 보고한 후,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에 대한 의결 후 확정함
- 읍·면·동 단위에서 진행되는 주민자치회형 사업의 경우 사전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회·동센터의 참여 및 실행 의지를 파악한 뒤 시·군·구·읍면동 연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발굴 의제사업에 대한 검토 및 지역 자원 조사 과업을 시행하도록 함
  - 총 두 차례에 걸쳐 읍·면·동의 사업 의제를 발굴·검토함으로써 사업 내용과 계획을 구체화하고 적정한 실행주체를 설정함
  - 발굴된 사업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협업 네트워크가
     사업 구체화 실시. 총회 승인으로 사업이 최종 선정되며 사업별 구체적
     예산계획에 대한 시 검토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함

## 4) 주민참여예산의 주요기구

○ 인천광역시는 참여예산기구 기능 강화 지원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지원협의회)와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음

- 지원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제도운영에 대한 전반적 지원의 기능을 담당
- 지원협의회 위원은 전문가, 관계자, 공무원 등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됨
- 지원협의회 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예산기구 기능이 강화를 도모 하고 있으며, 협의회 활동이 실질적 성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함
-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는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참여예산 생태계를 조성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의 임무를 수행을 위해 설립되었음
- 주민참여예산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센터장을 비롯한 총 5명의 인력으로 구성됨

**〈표 3-8〉**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주요 활동(2022년 기준)

주요 활동	내용
예산학교 운영	• 참여예산에 대한 단계별 교육 운영 • 위원회 위원 대상 필수 교육과정 운영
운영 지원	• 분과위원회 회의 지원 • 협치단별 회의 지원 및 기본 교육 실시
생태계 조성	<ul> <li>주민참여예산 집담회, 온라인 공론장 확대를 통한 의견 공유</li> <li>자치단체 협업체계구축</li> <li>시민기자단 운영</li> </ul>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	• 청소년 대상 참여예산교육 실시 • 교육 수료 후 희망자에 한해 협치단을 구성하고 청소년 분야 사업 발굴
기획 및 홍보	• 공동주택 홍보물 부착, 승강기 홍보 영상 송출 등

출처: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p.20) 저자가 정리

- 인천광역시는 협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학교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음
  - 예산학교는 참여예산과 관련된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과정으로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기본과정(2과정), 심화과정(3과정), 전문과정(6과정) 등 단계별 교육으로 구성

참여예산위원

협치단

교육과정 내용 대상

기본과정

• 상설예산학교
• 온라인 콘텐츠 수어 보강

• 참여형 의제 발굴
• 섬 지역 예산학교
• 찾아가는 예산학교
• 신임위원 기본교육(심의 및 모니터링 등)
• 심화교육(주민제안 심의 실습, 분야별 의제 발굴 등)

〈표 3-9〉 인천광역시 예산학교 운영과정(2022년 기준)

출처: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p.25)

• 참여예산 리더 교육

• 협치형 사업 발굴 교육

• 성인지 교육

#### 3. 시사점

전문과정

- 광역시별 참여예산 제도운영은 유사하나, 지원조직에 관한 운영은 지자체별 차이가 나타남
  - 제도 운영설계 측면에서, 참여주체(주민의 정의), 참여 범위 운영, 제안 사업의 유형 및 공모절차, 사업선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 기회, 민관 숙의· 공론화 과정의 제도운영, 참여예산운영 전담조직, 교육 및 홍보에서 큰 차이가 보이지 않음
  - 인천은 1) 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심의, 참여예산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역할, 2) 참여예산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청소년 참여예산 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민관지원관 활용하여 협치형 사업운영지원을 함으로써 시민참여 저변 확대를 지워
  - 대구는 1)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부처 담당자를 간사로 참여예산 절차 내에서 참여예산위원회와 광역시 참여담당자 간의 관계를 조율,
     2) 공감포럼을 운영하여, 참여예산편성시기에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의 재심의를 통해서 제안서를 정교화하는 과정을 추진

⟨표 3-10⟩ 예산과정별 참여예산 내용

분류	유형	월	내용	대구	인천	광주	부산	대전	울산
	준비단계	1월-2월	• 운영계획 수립·승인	Υ	Υ	Υ	Υ	Υ	Υ
	참여접수	3월-4월	• 공모사업 접수	Υ	Υ	Υ	Υ	Υ	Υ
	심의단계	4월-6월	• 사업타당성 검토	Υ	Υ	Υ	Υ	Υ	Υ
	심의단계	6월-8월	• 사업심사	Υ	Υ	Υ	Υ	Υ	Υ
예산	결정단계	8월	• 사업선정(총회개최)	Υ	Υ	Υ	Υ	Υ	Υ
편성	반영단계	9월-11월	• 선정사업 예산반영	Υ	Υ	Υ	Υ	Υ	Υ
	참여확대	3월-5월	• 사업계획서 컨설팅단 운영	Υ	Υ	Υ	Υ	Υ	N
	참여확대	8월	• 참여예산편성 우선순위 설문	Υ	Υ	Υ	Υ	Υ	N
	참여확대	9월-10월	• 23년도 시전체 예산 방향 분과 위원회 개최	Y	Y	Y	Y	Y	Υ
예산 집행	참여확대	7월,11월	• 참여예산 진행 및 부정관련 모니 터링 실시	Y	Y	Y	Υ	Υ	N
80	참여확대	상시	•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	Υ	Υ	Υ	Υ	Υ	Ν
결산	참여확대	12월	• 참여예산 성과평가 토론회 개최		Υ	Υ	Υ	Υ	Υ
평가	참여확대	11월	• 기초 참여예산제 평가	Υ	Υ	Υ	Υ	Υ	Υ
역량	참여확대	상시	• 예산학교 운영	Υ	Y	Υ	Υ	Υ	Υ
			• 참여예산지원센터	N	Υ	N	N	N	N
역량 강화	지원조직	상시	• 참여예산지원협의회	Υ	Υ	Υ	N	N	N
84			• 주민참여예산연구회	N	N	N	N	Υ	Ν
예산 편성	참여확대	편성단계	• 참여예산 미선정된 사업 재선 정위 운영	Υ	N	N	N	N	N
			• 주민의견서 반영*	Υ	Υ	YY	Υ	YY	Υ

Y: 운영, N:미운영

주민의견서 반영 \*다양한 형태 존재

대구: 시전체 예산을 예산반영단계(9-11월)에 참여위원 대상

인천: 참여예산을 예산심의단계(7-8월)에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

광주/대전: 23년도 예산편성방향을 참고용으로 온라인 설문(7-8월)하고, 시전체 예산을 예산반영단계(9-11월)에 참여위원 대상으로 하는 한편,

부산: 23년도 예산(안)을 예산반영단계(10-11월)에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 울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편성방향을 연 2회,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

- 현행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참여예산제도는 유사하게 제도설계가 되어있는데, 이는 서울시에서 추진한 참여예산제도의 고도화 내용을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권고하면서 유사한 사업유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참여예산 사업유형화(참여형, 협치형, 자치주민형 등)에 따라 참여예산 담당자 및 기구의 역할에 영향을 주게 되고, 각 주체들의 역할은 조직문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
  - 특히, 참여예산제도의 지원조직은 지자체의 자율재량으로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짐



#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도 진단

제1절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도 개요

제2절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도 주요 항목 진단

# 제4장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도 진단

# 제1절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도 개요

#### □ 목적(조례 제1조)

○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실현

####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시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절차)
-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11.4.1 제정)

# □ 추진경과

〈표 4-1〉 시민참여예산 추진 경과

구 분		주요내용
조례제정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영조례)	2011. 04. 01.
제1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80명	• (운영기간) 2011. 09. 14.~2013. 04. 30. • (예산편성 의견수렴) 23건 155억 원 - '12년 8건 52억 원, '13년 15건 103억 원
제2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80명		• (운영기간) 2013. 05. 01.~2015. 04. 30. • (예산편성 의견수렴) 41건 168억 원 - '14년 23건 76억 원, '15년 18건 92억 원
제3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100명	• (운영기간) 2015. 05. 01.~2017. 04. 30. • (시민제안사업 공모) 104건 180억 원 -'16년 78건 125억 원, '17년 26건 55억 원

구 분		주요내용
제4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100명	• (운영기간) 2017. 05. 01.~2019. 04. 30. • (시민제안사업 공모) 58건 141억 원 - '18년 24건 66억 원, '19년 34건 75억 원
제5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99명	• (운영기간) 2019. 05. 01.~2020. 12. 31. • (시민제안사업 공모) 87건 140억 원 - '20년 35건 72억 원, '21년 52건 68억 원
제6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97명	• (운영기간) 2021. 01. 01.~2022. 12. 31. • (시민제안사업 공모) 48건 58억 원 -'22년 48건 58억 원

#### □ 사업 유형별 현황

- 22년도는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그린-스마트-펀 도시 광주 조성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
  - 21년~22년(전 유형 공모사업으로 전환)
- O 유형1: 시정참여형
  - 시 소관 사업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시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
  - 예산규모 90억 원으로, 개별사업은 2023년 사업완료 가능한 5억 원 이하 사업의 제한
  - 22년도는 그린·스마트·펀시티 조성을 위한 사업

#### 그린·스마트·펀시티 (22년도 시정참여형 주제)

-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스마트·펀 시티 조성
- 광주의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스마트·펀 도시로 젊음이 있는 도시 구성
  - (그 린 시 티)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친환경 청정 녹색도시·기후안심도시·녹색산업도시
  - (스마트시티) 향후 100년을 책임질 인공지능 기반 도시
  - (펀 시 티) 광주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으로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을 즐기는 도시
- 유형2: 정책연구형(청년참여형)
  - 청년의 일자리, 창업지원, 맞춤형 교육, 창작 활동 등 청년이 희망이 되는 청년정책 사업

- 예산 규모 10억 원으로, 운영주체는 청년참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1) 일자리, 창업, 교육, 복지 등 청년지원사업 발굴 및 선정, 2) 참여예산 위원회와 소통을 위한 협치 운영

#### O 유형3: 지역참여형

- 구 소관 사업으로 지역사회 주민불편 등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사업
- 2023년 사업완료 가능한 5천만 원 이하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20억 원으로 '21년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결과 반영 실링 조정

#### O 유형4: 동단위계획형

- 주민참여를 통해 발굴·선정한 동단위 현안의제를 주민이 직접 실행까지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창구 마련
- 지역(동)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동단위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동을 대상으로 육아, 안전, 복지, 교육, 경제, 공간, 문화, 위생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
- 예산규모 5억 원으로, 자치구별 1억 원 범위 내 통합관리(동별 최소 10백 만 원 ~ 최대 50백만 원 범위 내 지원)

⟨표 4-2⟩ 시민참여예산 유형별 사업(22년도)

구분	시정참여형	정책연구형(22년도 신설) (청년참여형)	지역참여형	동단위 계획형 (21년도 신설)		
사업 규모	90억 원	10억 원	20억 원 * 구별 실링 내 통합관리	5억 원		
사업비	5억 원 이하	상·하한선 無	5천만 원	이하		
대상	• 시 전체 또는 2개구 및 시민 편익 향상시	이상 걸쳐있는 도시문제 해결 업	• 마을단위, 자치구 대상 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 및 편익 향상 사업			
사업	복지, 환경, 도시재생, 교통, 문화관광체육, 안전 등	일자리, 저출산, 맞춤형 교육 등 청년지원사업	- (동단위 계획형 의제발굴 기준 * 계획별도 수	충족		
추진 방법	사업공모	사업공모	사업공모	주민총회		

- 20년(19년 대비 2개 유형을 신설하여 총 3개 유형으로 확대)
- 시정참여형 사업:시정참여형(공모)+시정협치형사업(정책제안)+지역참여형 사업(공모)

〈표 4-3〉시민참여예산 유형별 사업(19년대비 20년도)

구분	시정참여형 사업	시정협치형 사업(신설)	지역참여형 사업(신설)
사업규모		100억 원 * 통합관리	20억 원 * 구별 4억 원 범위 내 통합관리
사업비	• 일반사업 5억 원 (* 협치형 상·하힌		• 일반사업 5천만 원 이하
대상사업	및 시민편익 향상/ * 경제·일자리, 특 도시재생, 안전 제안채택 기준 :	 루지, 문화체육관광, 환경, 교통, 등* 시정협치형: '바로소통광주'	

# □ 유형별 추진절차(22년도)

- 시정참여형, 정책연구형은 시의 사업부서 검토를 거쳐 참여예산위원회(분과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청년참여위원회에서 사업선정을 하여 총회승인
- O 지역참여형, 동단위계획형은 구의 사업부서 검토를 거쳐 구 참여예산위원회 및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선정을 하여 총회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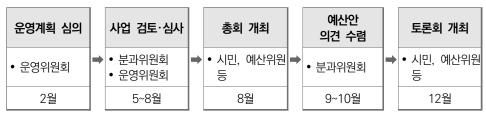
구분	사업공모·발굴 (3~4월)		사업검토 (4~6월)		사업심사 (6~8월)		사업선정 (8월)		예산반영 (9~12월)
시정 참여형	• 인터넷, 팩스 등 * 상시접수 병행	•	<ul><li>市사업부서 검토</li></ul>		• 市참여예산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최종심사		<ul><li>시민 투표</li><li>사업최종</li></ul>		<ul><li>예산편성</li><li>시의회 의견서</li></ul>
정책연구형 → 청년 참여형					• 청년참여위원회 및 운영 위원회 최종심사		선정 • 총회 승인		제출 • 예산심의
지역참여형	• 인터넷, 팩스 등     * 상시접수 병행     • 區소관 제안사업     (市→區 이관)	•	트로 시티이다.	<b>&gt;</b>	<ul> <li>區참여예산위원회 및 市참여예산운영위원회 최종심사</li> </ul>	•	<ul><li>市총회 승인</li></ul>	•	
동단위 계획형	<ul> <li>주민총회 →</li> <li>동주민센터 제출</li> <li>→區</li> </ul>								

⟨표 4-4⟩ 유형별 시민참여예산 추진절차

####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의 주요내용

- O 시민참여예산위원 역량을 강화하여 참여예산 전문가 양성
  - 시민참여예산위원 대상 예산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제안사업관련 실무교육, 모니터링 방법 등 교육
  - 예산학교 교육 이수율과 회의 등 참석률 저조한 경우 연임에서 배제
  - \* 예산학교 참석률 48% → 60% 상향조정
- O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위한 토론회 개최(연1회)
  - 전문가, 시민참여예산위원 등이 참여하여 타시도 우수사례 공유
  - 위원 역량강화 및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 방안 강구

# O 운영일정



#### O 회의운영실적(21년도 기준)

- 활동기간: 연중(수시)

- 운영횟수: 총 39회('20년 30회 대비 9회 증가)

〈표 4-5〉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실적(21년도)

운영·개최 총횟수	전체위원회	분과위	운영위	연구회	비고
39회	1	33	3	2	전년 30회 실시

- ① 전체회의 1회: 참여예산 사업선정 총회(8.30.)
- ② 운영위원회 3회
  - 1차 운영위원회(2.16.), 2차 운영위원회(4.19.), 3차 운영위원회(7.29.)
- ③ 분과위원회 33회
  - 1차 분과위원회 개최: 7개 분과(2.2.~2.5.)/2차 분과위원회 개최: 7개 분과(6.11.~6.25.)/협치·컨설팅 회의 개최: 5개 분과(6.25.~7.3.)/3차 분과위원회 개최: 7개 분과(7.13.~7.15.)/4차 분과위원회 개최: 7개 분과(9.27.~10.8.)
- ④ 활성화 연구회 2회: 1차 연구회의(8.5.), 2차 연구회의(11.10.)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 후 전자 추첨(79명) 및 내부·시 의회의 전문가 추천(13명)으로 구성하여 89%를 외부참여로 확대
- 시민의 대표인 참여예산위원 구성 시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 하기 위해 시 조례에 반영(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2020.7.6. 개정)

**〈표 4-6〉** 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구성(22년도)

위원회	위원회 성별 위원 수		우	위원회 연령별 위원 수				비고
<del>총수</del> (명)	남성	여성	24세 이하	25세~ 34세	35세~ 64세	65세 이상	장애인 위원수	비고
92 (100)	55 (63)	37 (37)	3	11	59	19	3	<ul><li>위촉직 92명 (여성비율 40% 구성)</li><li>()당연직 8명 포함</li></ul>

#### □ 컨설팅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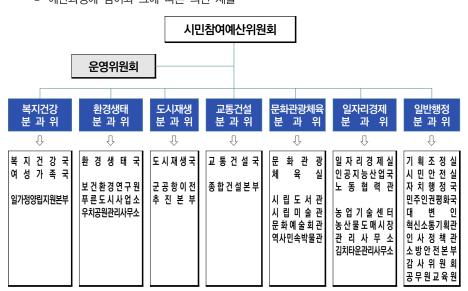
- (기 간) 3~5월
- (인원) 총 20명 내외
  - 각 부야 민간단체 전문가, 전직 참여예산위원, 마을활동가 등

- (역할) 시정참여형 제안사업에 대한 컨설팅
  - 제안내용 구체화, 수정, 보완 등 제안자에 대한 상담지원
  - 시정참여형 제안사업의 부적격 기준 숙지, 안내하여 사업품질 제고
- 추진절차



#### 〈광주광역시의 시민참여위원회 제도〉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 (구성인원) 97명(위촉직 89, 당연직 8)
  - (임 기) 2년('21.1.1.~'22.12.31.)
  - (운 영) 운영위원회(16명), 7개 분과위원회(분과별 12-14명)
  - (임 원) 위원장·부위원장
  - (주요기능)
    -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과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분과위원회)
    -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 예산과정에 참여와 그에 따른 의견 제출



#### □ 예산학교 운영

#### O 추진방향

-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및 올바른 참여방향 제시
- 실무기법 향상을 통한 참여예산위원의 역량 강화
- 지역의제 발굴, 참여예산 활동으로 지역공동체의식 함양
- 제안사업 선정 절차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진행

#### O 운영개요

-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3조(예산학교 운영)
- 기간: 2022. 3 ~ 12월
- 교육대상: 400여명(市・자치구 시민참여예산위원, 일반시민 등)
- 운영방식: 민간위탁(공개모집)
- 교육운영: 기본교육, 역량강화교육, 찾아가는 예산학교

#### **〈표 4-7〉** 참여예산학교 일정(22년도)

과정	시기	대상	교 육 내 용	비고
기본 교육	상시	일반시민 (예비위원 등)	• 참여예산제도의 의의 • 시민참여예산 운영 현황	온라인 오프라인
	연중		• 특강(참여예산 사례 교육, 위원회의 역할)	
역량	3~4월		• 제안서 작성 실습	
강화	5~6월	위현 -	• 사업 타당성 검토 방법	분과별 교육
교육	8월		• 사업 우선순위 기준정하기	
	7월, 11월		• 사업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단
찾아	상시	자치구(區주민	참여예산제도의 이해     제안사업 사례 소개     성인지예산의 이해	
가는 예산 학교	3~4월	참여예산위원, 주민자치회 등), 청소년, 청년,	• 제안사업 공모 방법 (제안서 작성방법, 사업예시 등) • 지역의제 발굴	추진
744	5~7월	여성 등	• 제안사업 심사 방법	과정별 연계
	8월		• 사업우선순위 기준 정하기	

# ○ 교육실적: 일반시민, 위원, 청년, 청소년 등 총 25시간 교육 운영

⟨표 4-8⟩ 참여예산학교 교육운영현황(21년도)

교육과정명(프로그램명)	교육 대상	교육 횟수 (회)	교육 일시 (일자별)	교육 시간 (일자별)	수료자 수 (일자별)
계		13회		25시간	212명
				1	
온라인 예산학교	일반시민	3	2021.5.~ 연중	1	61
				1	
			2021.4.30.	3	33
		2021.5.10. 2 2021.5.11. 2 2021.5.12. 2 2021.6.22. 3	2	15	
역량강화과정	참여예산위원		2021.5.11.	2	14
			2	16	
			2021.6.22.	3	30
	청소년	1	2021.6.26.	2	11
	청년	1	2021.10.6.	2	6
찾아가는 예산학교	TIGANI	2	2021.10.26.	2	8
	지역주민	2	2021.11.8.	2	8
	지역주민(야간)	1	2021.11.2.	2	10

# □ 시민참여 보장하는 제도

⟨표 4-9⟩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보장제도

구분		내용
예산편성	시민설문 조사	(기 간) 7~8월     (대 상) 1,000여명(일반시민)     - 자치구, 연령, 성별 등 최대한 안배     (내 용) 2023년 예산편성 방향 등 재정운용 전반     (방 법) 온라인(시홈페이지), 오프라인(민원실 비치 등) 병행     (결 과) 시 홈페이지 결과 공개, 예산편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

	구분	내용
	시민의견 제시	(기 간) 9~10월     (방 법)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별 의견수렴     (내 용) 2023년 시 전체 예산편성(안)에 대한 의견제시     - 1억 원 이상 주요·신규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포함     (결 과) 시의회 제출(11월중)
에산집행 모니티 운 시민리 유	모니터링단 구성	• (구성인원) 30여명(시민참여예산위원) - 분과위원회별 대상사업을 고려하여 모니터링단 구성(2인1조) • (주요내용) 2022년도 예산에 편성된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모니터링단 운영	<ul> <li>(운영기간) 7월 / 11월(연2회)</li> <li>(대 상) 2022년 시민참여예산편성 사업(48개 58억 원)</li> <li>(추진절차) 사업부서 추진현황 제출→모니터링→결과통보 및 조치</li> <li>(점검방법) 서면검토 + 현장확인(필요시)</li> <li>(점검내용) 사업추진현황, 부진사유, 예산낭비 요소 등 전반적 점검</li> </ul>
	시민감시단 운영 (예산바로쓰기)	<ul> <li>(구성인원) 27명</li> <li>(임 기) 2021. 2.~2023. 2.(2년)</li> <li>(주요내용)</li> <li>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 신고,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li> <li>예산낭비신고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li> <li>낭비신고 관련 제도개선 등</li> <li>(처리절차) 예산낭비신고(제안·건의 사항 포함)→ 부서검토→ 결과회신</li> </ul>
예산결산	결과공개 및 시민의견 수렴	<ul> <li>(기간/대상) 2022. 7~8월 / 일반시민, 시민참여예산위원</li> <li>(추진절차) 결산의회승인→결산 고시·공개→결산정보 공개→의견수렴</li> <li>(주요내용)</li> <li>주요시업 결산 설명서 등 결산결과 시 홈페이지 공개 및 의견수렴</li> </ul>

# □ 시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운영 제도

⟨표 4-10⟩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활성화 제도

	구분	내용
소통	시민 투표	□ 추진개요 (추진기간) 8월(1개월) (대 상) 시정참여형, 정책연구형 사업 (참여방법) PC, 모바일로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 접속 (투표자격) 시민, 참여예산위원 (결과발표)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총회 현장 (결과반영) 위원투표(50%) + 시민투표(50%)

구분		내용						
		□ 추진방법 총회 개최 전 온라인·모바일 일반 시민투표 실시(사전투표기간 1개월) 전체대상 사업의 10% 선택하여 투표(중복 선택 불가) - (일반시민) 분과위원회별 사업 구분 없이 선택 - (참여예산위원) 소속분과 사업(2%)과 타 분과사업(8%)을 구분하여 선택						
	총회 개최	□ 추진개요 (일시/장소) 8월 말 / 시청 회의실 (참석인원) 200여명(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일반시민, 市・區 참여예산위원, 청년참여위원 등 (주요내용) - 시정참여형・정책연구형 사업 설명, 질의응답 및 투표 - 지역참여형, 동단위계획형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선정 결과 발표						
참여 활성 화	포상 제도	□ 시민제안사업 우수자 시상 (대 상) 시민제안사업 중 추진 완료된 사업 (내 용) 총회에서 우수제안사업 선정(5개) (시 상) 시장 상장 □ 시민참여예산제 우수 자치구 시상 (대 상) 2개 자치구 (내 용) '2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태 평가하여 선정 (시 상) 시장 상장 및 지역참여형 공모사업 실링범위 구별 조정 □ 시민참여예산제 우수 활동자 표창 (대 상) 市・區 참여예산위원, 공무원 (내 용) 분야별 심사기준에 의거 선정(14명) (시 상) 시장 상장 □ 예산당비 신고보상(5월) (내 용) 예산당비신고 중 타당성을 심사하여 격려금, 사례금 구분지급 (절 차) 예산당비신고 심사의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지급						
	공감 토론	□ 토론회 개요 (일시/장소) 11월 말~12월 초 / 시청 회의실 (참석인원) 200여명(일반시민, 市・區 참여예산위원 등) (주요내용) 시민참여예산제 유공자 포상 및 '22년 운영성과 보고 -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과 공무원 등에게 표창장 수여 - 각 기관별 운영성과 발표, 문제점 진단에 따른 개선방향 발표 - 7개 분과위별 시민참여예산 발전방안에 대한 원탁토의 후 결과발표 (추진방법) 시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 주관, 퍼실리테이터 등 행정지원 □ 활용계획 토론결과 다음연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반영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위한 자치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 제2절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도 주요 항목 진단기

#### 1. 참여예산 적정규모 및 사업유형

#### 1) 참여예산의 적정규모 현황

- 광주광역시의 참여예산 편성 규모는 최근 5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광주광역시는 2018년 66억 원에서 2019년 75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년, 21년, 22년까지 각 72억 원, 68억 원 58억 원으로 감소
- O 반면, 인천광역시 참여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대구광역시는 감소 후 증가, 부산광역시는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
  - 2018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액은 14억 원이었으나 2019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19년 199억 원, 2020년 297억 원, 2021년 401억 원, 2022년 485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 대구광역시(2018년 130억 → 2022년 178억)와 대전광역시(2018년 29.5억 → 2022년 194억)의 경우 예산 편성규모에 있어 증가 추세를 보임
  - 부산광역시는 2019년 예산 편성규모가 증가하였으나 2020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음
  - 울산광역시는 광역시 가운데 제일 큰 규모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 484억여원으로 감소한 뒤 2022년 510억 원으로 소폭 상승하였음
- 광주광역시의 참여예산 편성규모는 광역시 평균 규모, 증가액 및 증가율 규모. 1인당 편성액을 고려하였을 때 하위권에 속함
  - 2022년 울산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은 510억이었으며 인천광역시는 485억으로 뒤를 잇고 있음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의 편성 규모는 2019년 급격하게 증가(14억 → 199억, 1,321%증가)하였으며 증가 폭도 80억에서 100억 사이로 큰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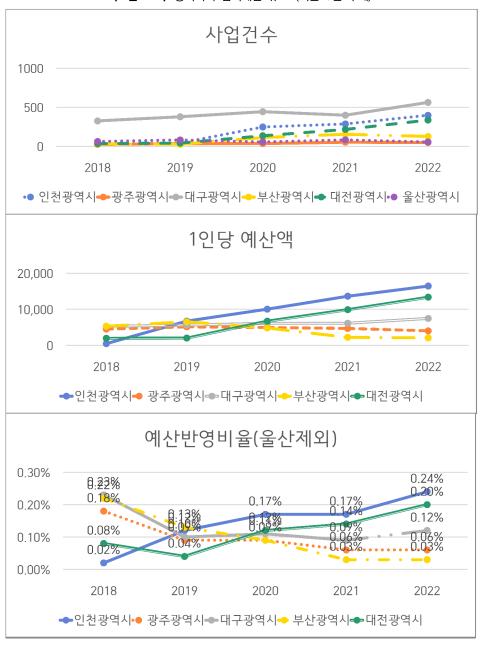
<sup>7)</sup> 진단의 내용은 참여예산제도의 관련자(담당공무원, 사업부서, 참여예산위원, 참여예산전문가)들의 5차레의 회의를 통한 내용을 기존 참여예산제도의 제도개선방안의 자료와 함께 기술한다.

- 반면, 부산광역시는 1인당 편성액 및 예산반영비율은 광주광역시보다 낮은 수준

〈그림 4-1〉 광역시의 참여예산 규모1(최근 5년 추세)



〈그림 4-2〉 광역시의 참여예산 규모2(최근 5년 추세)



⟨표 4-11⟩ 광역시의 참여예산 규모 변동 비교(최근 5년 추세)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목표액	_	300	400	500	500
	예산편성(억)	14	199	297	401	485
	증가액(억)	4	185	98	104	84
인천광역시	증기율(%)	30.2	1321.4	49.2	35.0	20.9
	예산반영건수	28	42	247	286	397
	인구수(만)	295.4	295.7	294.2	294.8	295.5
	총예산 중 반영비율	0.02%	0.12%	0.17%	0.17%	0.24%
	예산목표액	-	40	170	130	170
	예산편성(억)	184	225	164	75	70
	증가액(억)	-260	41	-61	-89	-5
부산광역시	증기율(%)	-41%	22	-27	-54	-6
	예산반영건수	30	26	112	154	126
	인구수(만)	344.1	341.4	339.2	335.0	333.8
	총예산 중 반영비율	0.22%	0.13%	0.09%	0.03%	0.03%
	예산목표액	130	140	150	180	190
	예산편성(억)	130	138	149	148	178
	증가액(억)	35	8	-3	-4	-10
대구광역시	증기율(%)	36.8	6.1	7.9	-0.6	20.2
	예산반영건수	325	378	443	398	562
	인구수(만)	246.1	243.8	241.8	238.5	237.7
	총예산 중 반영비율	0.23%	0.10%	0.11%	0.09%	0.12%
	예산목표액	30	30	100	150	200
	예산편성(억)	29.5	30	99	145	194
	증가액(억)	10	0	70	50	50
대전광역시	증기율(%)	50	0	233.3	50.5	34.4
	예산반영건수	35	41	135	216	336
	인구수(만)	148.9	147.5	146.4	145.2	144.9
	총예산 중 반영비율	0.08%	0.04%	0.12%	0.14%	0.20%

		2018	2019	2020	2021	2022
광주광역시	예산목표액	120	120	120	125	125
	예산편성(억)	66	75	72	68	58
	증가액(억)	11	9	-3	-4	-10
	증기율(%)	20.0	13.6	-4.0	-5.6	-14.7
	사업건수	24	34	35	52	48
	인구수(만)	145.9	145.6	145.0	144.1	143.6
	총예산 중 반영비율	0.18%	0.09%	0.09%	0.06%	0.06%
	예산목표액	1,235			1,216	959
	예산편성(억)	1,179	1,266	1,315	484	510
	증가액(억)	225	87	48	-831	26
울산광역시	증기율(%)	23.6	7.4	3.9	-63.2	5.4
	사업건수	61	81	55	82	55
	인구수(만)	115.5	114.8	113.6	112.1	111.6
	총예산 중 반영비율	4.30%	1.96%	2.08%	0.63%	0.71%

출처: 6대 광역시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 2) 참여예산의 사업유형 현황

- 2018년 서울시의 사업유형의 다각화 운영 이후, 행안부의 권고로 광역시는 서울의 사업유형을 벤치마킹하여, 기존 유형을 신설, 변경, 통합하여 운영
  - 2019년 이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에서 시정협치형, 지역 참여형, 주민자치회형 등을 신설
  - 광주광역시와 정책연구형을 도입하여 청년정책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대전광역시는 정책숙의형을 통해 지속발전도시구현 사업 등을 추진
  - 울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참여예산제도를 마을공동체 또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
  - 인천광역시는 2020년까지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5개의 유형 (일반 참여형, 지역 참여형, 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동협치형)을, 2021년도 부터 3개 유형(참여형, 협치형, 동협치형)으로 통합 운영

⟨표 4-12⟩ 광역시의 참여예산 유형 비교

	유형	유형 ॥	유형 🏻	유형 Ⅳ
이 처	참여형	협치형	주민자치회형	
인 천 광역시	<ul><li>시소관사업</li><li>2개이상 군구사업</li></ul>	<ul><li> 협치형</li><li> 민관공동참여</li></ul>	• 읍면동단위 • 주민자치회 운영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시정협치형	지역협치형
부 산 광역시	• 시소관사업 • 단년(예산제한없음)	<ul><li> 구군소관사업</li><li> 구군별 4억/</li><li> 1억이내 사업</li></ul>	<ul><li>민관협력(광역도시 문제)</li><li>사업별 2억 원이내</li></ul>	<ul><li>민관협력(생활밀착형: 구or동)</li><li>구군별 2억/5백만 원</li></ul>
ги ¬	시정참여형	청년참여형	구군참여형	<del>읍면동</del> 참여형
대 구 광역시	• 시소관사업	• 청년정책사업	• 주민참여예산위 자율권	• 읍면동 평가
광 주	시정참여형	정책연구(청년참여)형	지역참여형	동단위계획형
광역시	• 시소관사업	• 청년정책사업	• 구소관사업	• 주민자치회 운영동 대상
	시정참여형	정책숙의형	구정참여형	1. 동분야지원형
대 전		· 기소바저트시크취		• 주민조직/자치회
광역시	• 시소관사업	• 지속발전도시구현 사업	• 구 소관사무	<ul><li>2. 마을계획형</li><li>• 행정, 법정동, 아파트</li></ul>
울 산	시정제안사업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사업	주민주도형 공모사업	일반참여사업 (사업부서 주도)
울 산 광역시	• 시소관사업	• 구·동사업 • 개인균등분 주민세 (31.6억)	<ul><li>마을만들기 시범마을</li><li>마을계획단 운영</li><li>마을공동체 활성화</li></ul>	• 시민참여·의견청취

출처: 6대 광역시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 3) 참여예산의 적정규모와 사업유형의 진단

#### □ 참여예산의 적정규모

- 광주광역시의 참여예산규모는 광역시 중의 하위권 규모에 속하고 주민참여 예산비중이 높지 않으나, 그렇다고 참여예산규모를 확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진단을 하기 어려움
  - 적정규모가 참여예산 예산편성규모 자체의 크기, 사업접수 규모, 위원회 선정 규모, 예산편성 규모, 예산 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볼 때 광주광역시는 타 광역시에 비교시 하위권에 있음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건수	632	620	559	514
접수	예산액(백만 원)	136,800	118,400	85,261	89,519
위원회	건수	40	42	63	83
선정	예산액(백만 원)	9,885	8,720	11,914	12,827
	건수	40	37	61	79
예산 편성	예산액(백만 원)	9,885	7,860	8,867	10,167
	선정대비	100.0	90.1	74.4	79.2
	건수	34	35	52	48
의회	예산액(백만 원)	7,545	7,230	6,849	5,897
심의 확정액	접수대비	5.5	6.1	8	6.6
	편성대비	76.3	91.9	77.2	58.0
	선정대비	76.3	82.9	57.5	45.9

⟨표 4-13⟩ 광주광역시의 참여예산 규모 변화

- 예산규모는 이론적으로 지역주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1차적 규모의 효율적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는데, 참여예산이 과연 광주광역시의 전체 예산을 운영하는 주요제도인지 여부의 판단 필요

- 2016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검토보고서8)에 따르면,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의 반영 비율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0.1%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근거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시되었음
  - 현실적으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당시, 75개, 전체 30.9%)의 재정구조가 취약하여 일률적으로 5%의 주민참여예산을 반영시 현실적 운용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지자체의 재정자율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
  - 무엇보다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의 확장보다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표출하고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광주광역시의 참여예산의 적정규모에 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참여예산 규모 적정성은 1) 참여예산 제안사업의 속성, 2) 지자체장의 의지, 3) 참여예산제도의 취지 및 목적 등과 같이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권 내에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
  - 제안건수 및 제안건수 예산규모는 참여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인천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자체 장의 의지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참여예산 규모가 증가한 사례를 보면 참여예산 규모의 적정성은 제도 운용의 재량으로 볼 수 있음

<sup>8)</sup>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1075)

- 반면, 참여예산제도의 취지 및 목적, 참여예산제도의 유형(관주도, 협치, 주민주도)에 따라 적정규모는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
- 참여예산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참여예산의 규모가 클수록 역할과 권한이 비례한다고 판단되어, 참여예산의 규모가 현 상태에서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위의 내용을 종합할 때, 광주광역시의 참여예산의 적정규모는 현재 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주요 이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참여예산 규모보다는 사업유형에 따른 사업계획의 실효성 제고. 절차 내에서 숙의과정 강화 등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 참여예산의 사업유형

- 광역시의 사업유형은 위에서 보았듯이 유사한 측면이 있음
  - 울산시와 같이 광역시-소속 구·군의 공동과세의 형식으로 연계한 다른 제도틀이 아니라면, 참여형, 협치형, 자치구계획형의 배분형태
- 현행 사업유형에서 광주광역시의 사업유형의 적정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1) 4개년 참여예산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사업들이 타 지자체와 비교 시 유사한 사업인지, 광주광역시의 고유사업인지에 관한 근거, 2) 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현행 사업유형이 수요 충족여부를 체크
- 광주광역시가 최근 4개년의 참여예산의 기능별 사업규모의 변화를 보면. 교통건설. 환경생태. 복지건강 분야의 사업제안이 채택
  - 교통건설, 환경생태는 시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채택사업이 1년 단위 사업으로 한정되어서, 참여예산으로 채택 되는 사업들은 시민들이 광주광역시에서 살면서 필요한 사업이 제안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이와 같은 참여예산사업이 시민들의 살면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제안되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담당자들은 시민들이 민원성사업을 제안 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큼

⟨표 4-14⟩ 광주광역시의 참여예산 사업 규모 변화(기능별 분류)

(단위: 백만 원)

연도	교통건설	도시재생	문화관광 체육	복지건강	일반행정	일자리경제	환경생태	총합계
2018	2,800	800	1,530	2,050	1,620	930	2,270	12,000
2019	2,600	800	2,020	1,340	225	800	2,100	9,885
2020	2,270	500	410	500	340	550	2,660	7,230
2021	2,317	1,692	400	1,876	260	424	40	7,009
합계	9,987	3,792	4,360	5,766	2,445	2,704	7,070	36,124

- 광주광역시가 최근 4개년의 참여예산의 키워드 분석을 통한 빈도분석을 한 결과, 광주광역시의 참여예산의 제안사업은 1) 주제이슈, 2) 공간이슈로 구분되어 볼 수 있음
  - 주제이슈: 어린이공원, 안전, 호수공원, 지원, 운영, 프로그램, 함께하는 등의 키워드는 당사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제안
  - 공간이슈: 구축, 정비, 개선, 조성, 공사, 주변, 포장, 조성사업 등의 키워 드는 지역의 공간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제안

〈그림 4-3〉 광주광역시 참여예산 키워드 분석(최근 4년 추세)

#### 6대 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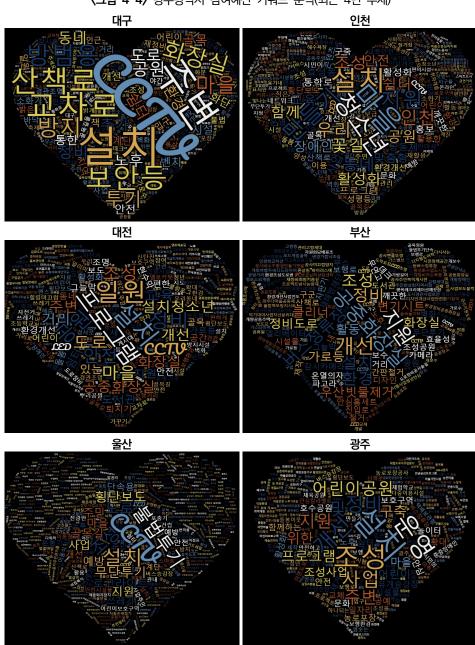


#### 광주광역시



출처: 6대 광역시의 2018-2021년도 제안책택 사업

○ 6대 광역시의 최근 4개년의 참여예산의 키워드 분석을 통한 빈도분석을 한 결과, 공통적으로 주제이슈와 공간이슈가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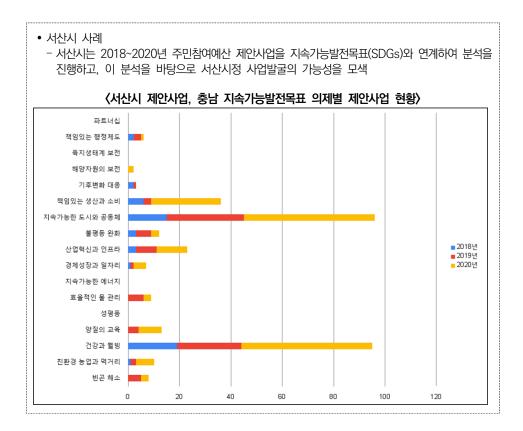
〈그림 4-4〉 광주광역시 참여예산 키워드 분석(최근 4년 추세)

- 광주광역시의 사업유형의 적정성 문제는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다른 '특· 광역시 · 도' 주민참여예산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맥을 같이하는데, 이는 광역시의 사무와 연계된 사항으로 볼 수 있음
  - 사업유형의 복잡함이 아니라 "광역시 주민참여예산에 어울리는 공간환경 개선 문제, 이슈 및 과제 문제, 당사자(청소년, 청년, 다문화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경로를 운영하는가"라는 문제
  - 현재의 기준은 단순하게 '2개 이상 군·구 해당 사업'이라는 모호함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광주시 입장에서 '공간환경개선, 이슈 및 과제, 당사자' 라는 문제가 '2개 이상 구 해당 사업'으로 보려는 의지만 있으면 모든 사업이 다 광주시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그 반대로 가능한 상황임
  - 광주광역시 '시정참여형'은 지역의 공간환경개선(광역 차원의 공간 조성 /정비/개선 등과 관련된 제안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 경로 라고 볼 수 있는데, 광주광역시는 여기에 '그린·스마트·펀시티 조성을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면서 지역의 이슈 및 과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 경로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

〈표 4-15〉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 유형별 사업 진단(22년도)

구분	시정참여형	정책연구형(22년도 신설) (청년참여형)	지역참여형	동단위 계획형 (21년도 신설)	
특징	공간환경개선 이슈 및 과제 당사자	이슈 및 과제 당사자	공간환경개선	공간환경 개선	
사업 규모	90억 원	10억 원	20억 원 * 구별 실링 내 통합관리	5억 원	
사업비	5억 원 이하	상·하한선 無	5천만 원 이하		
	• 시 전체 또는 2 해결 및 시민	개구 이상 걸쳐있는 도시문제 편익 향상사업	• 마을단위, 자치구 대상 지역사회 주민불편		
대상 사업	복지, 환경, 도시재생, 교통, 문화관광체육, 안전 등	일자리, 저출산, 맞춤형 교육 등 청년지원사업	- 해소 및 편익 향상 사업 - (동단위 계획형) '동 주민총회'의제발 기준 충족 * 계획별도 수립		
추진 방법	사업공모	사업공모	사업공모	주민총회	

- 광주광역시 '정책연구형(청년참여형)'은 당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 경로로, 당사자는 당사자의 예산 과정에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는 청소년/청년/다문화 등을 당사자로 분류할 수 있음
- 광주광역시 '지역참여형'은 지역의 공간환경개선(자치구 공간 조성/정비/개선 등과 관련된 제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경로
- 광주시 '동단위 계획형'은 지역의 공간환경개선(동 공간 조성/정비/개선 등과 관련된 제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 경로하고 볼 수 있으며, 광주시 '동단위 계획형'의 특성은 '동 주민이 직접 실행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점임
- 광주광역시의 시정참여형 '그린·스마트·펀시티 사업발굴' 주제가 시민주도로 결정된 사업 여부 판단 필요
  - 관주도의 주제를 이끌 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및 사업 발굴 한계
- 지역참여형과 동단위 계획형 사업은 광역시 입장에서는 정책실험의 장으로 활용 필요
  - 광역시의 입장에서는 광역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사업일 경우, 자치구에서 먼저 수행하여 광역시에서 수용하는 방안 모색 필요
  - 현실에서는 정책실패의 리스크를 관료사회에서는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된다는 악순환의 구조가 이어지면서, 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참신한 사업발굴의 한계



# 2. 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 및 참여 수준

# 1) 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

# (1) 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6대 광역시의 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은 조례에 명시
  - 광주를 비롯한 광역시에서는 참여예산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 회로 구성(인천 제외)
  - 위원회의 기능은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1)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과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3)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4) 예산과정에 참여와 그에 따른 의견제출, 5) 총회·분과위원회 개최 및 시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에 참여, 6)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8)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포함

구성 대구 부산 울산<sup>\*</sup> 인천 광주 대전 Υ Υ Υ Υ Υ Υ 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 Υ Υ Υ Υ Υ Υ Ν Υ Υ 운영위원회 Υ Υ Υ 회의 및 의결 Υ Υ Υ Ν Υ Ν 자료제출 및 협조 Υ Ν Ν Υ Υ Ν Υ Υ 회의록 공개 Υ Υ Υ Ν 총회 Υ Υ Υ Ν Ν Ν 주민참여지원센터 Υ Υ Υ Ν Ν Ν 예산학교 Υ Υ Υ Υ Υ Υ

〈표 4-16〉 조례에 명시된 참여예산위원회 규정(22년도)

- 주민참여지원센터 및 예산학교는 참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조직으로, 대구, 인천, 광주에 설립되어 있음
  - 광주광역시는 2020년 이전에는 주민참여지원센터가 설립되지 않아서,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프로그램 설계 필요

Y: 운영, N:미운영

<sup>\*</sup> 울산은 참여위원회의 설치가 임의규정에 해당하는 모델 1유형임

#### (2) 참여예산과정과 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

- 참여예산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분권위원회로 구성되는데, 운영위원회는 최종 제안사업 심의 및 위원회의 조정 역할을 주로하고,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제안사업의 심의 및 검토 역할
  - 현행 제도 내에서, 참여예산위원회는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평가 및 심의하는 역할로, 주민의 또 다른 대표(지방의원과 같이)가 주민의 제안을 평가하는 역할로 볼 수 있음
  - 제도 내에서 제안사업을 선정하는 심의 평가하는 주된 역할임에도, 대구 광역시는 공감포럼을 운영하여 예산참여위원회의 위원이 사업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를 다시 검토하는 역할 포함

**〈표 4-17〉**참여예산위원회 내 위원회 기능 및 역할(22년도)

Ŧ	분	광주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위	인원	97명(위촉89, 당연8)	100명(위촉93, 당연7)	100명(공모88, 추천12)	200명(공모160, 추천40)	110명(공모49, 추천12, 연임49)	90명(58명, 32명)
원 회	임기	2년(연임)	2년(연임)	1년(연임)	1년(연임)	2년(연임)	2년(연임)
-1	운영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인원	16명	16명	14명		9명	14명
운 명 위	기능	분과위원 운영방침 등 의견조정	주민제안사업 심사	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운영방향 의견 조정 등	주민제안사업 심의, 시 주요사업 청취 등
분	인원	7개분과 분과별 12~14명	7개 분과	6개분과 분과별 10~20명	12개분과 분과별 16명	7개분과 분과별 15~16명	6개분과 분과별 15명
과 위 	기능	사업심의 등 의견	사업심의 심사 등	주민의견 수렵 등	주민제안사업 검토 등	제안사업 심사 등	주민제안사업 심의, 시 주요사업 청취 등

- 참여예산위원들의 전문지식을 지원하는 컨설팅단 운영, 연임규정, 예산학교 등의 지원제도 마련
  - 22년 조례를 기준으로 볼 때, 광주를 비롯한 광역시의 참여예산위원회의 예산 연임규정을 명시
  - 민간전문가와 시민활동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참여예산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고, 인천시와 경기도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에서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
- 현재 6대 광역시의 참여예산제도는 3단계 과정으로 운영
  - 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의견수렴 단계에서, 1) 예산집행 과정에서 모니터링 및 시민감시단에서 참여, 2)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사업계획서의 선정을 위해 공론화 과정에서 숙의에서 주요 역할로 참여, 3) 예산 확정 및 공개 단계에서 주민의 대표로 참여하여 역할을 수행

⟨표 4-18⟩ 참여예산 단계별 참여예산위원회 역할

구분	주민의견 수렴	숙의/공론	확정/공개
주요 행위지	예산편성-주민(시민) 예산집행-참여예산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
지원 행위지	참여예산담당자	사업부서 담당자	예산담당자 지방의회
주요 참여 과정	사업유형별 사업 공모 및 발굴(동단위 계획형 주민총회 등)     시정참여형 제안사업 컨설팅     '주민자치회형 사업'지역자원 조사, 의제 발굴 및 검토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예산결산)결과 공개 및 시민의견 수렴     시민설문조사(예산편성 시민의견 수렴 및 의회 제출)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지원 및 공감 토론회     예산학교	사업유형별 사업분류 및 부서검토(사업부서)     사업심사(위원회 및 사업 부서의 통폐합, 구체화 등)     사업유형별 사업 선정	보고 및 최종 선정) • 시민투표

-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참여예산의 논의사항은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구체화하여 운영할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
  - 참여예산제 과정에서 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은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 계획서가 어떻게 제안되느냐에 따라 역할이 의존적
  - 광역 사무와 어울리는 제안사업을 발굴하는 것과 제안사업을 구체화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안사업의 수준이 사업화하기에 부족한 수준일 경우에는 과정상의 제도설계가 필요
  - 참여예산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서와 전문가 등이 함께 숙의를 진행하면서 제안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숙의 과정은 많은 시간이 필요
  - 제약된 참여예산 숙의/공론화 시기(6월-8월)에. 참여예산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추가로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부담 가중)
- 참여예산에서 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을 제안사업 발굴 및 구체화에 따른 사업 순위 선정이 아니라, "예산집행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로 설정할 경우, 현재 예산선정의 역할에서 추가적인 역할 및 기능이 필요
  - 이 경우에는 사업을 추적, 관리, 평가하는 과정에 설계하는 문제와 제안 사업 발굴 및 구체화에 참여한 시민,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예산위원회가 "어느 수준까지 참여"할 지에 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
  - 현행 관련자들의 입장에서는 시민, 전문가 등이 과도하게 월권을 행사 한다고 반발할 수 있음
  - 또한 제안사업 발굴 및 구체화를 통해서 편성되고 집행된 사업 성과가 외부 요인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처리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음
- 광주광역시의 참여예산 '사업유형' 과 관련하여, 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은 광역 사무에 어울리는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이 요구됨
  - 관련 문제는 "광역 사무에 어울리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가와 함께 발굴된 사업이 숙의를 거쳐서 구체화하고, 효과적으로 예산 과정을 운영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 광역 사무에 어울리는 사업을 발굴하는 단계, 2016년 이후 다양한 지방 자치단체에서의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참고 가능
- 따라서, 현재 다양한 사업계획서 내에서 발굴된 사업을 대상으로 숙의를 거쳐서 구체화하고, 효과적으로 예산 과정에서 운영할 수 있는가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 있음
- 공모에 매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화해야 하는 제도운영이 지속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효성 높은 사업들은 사업부서에서 이미 소유
  -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와 반복되는 민원 등의 문제도 시민과 사업부서에서 공유, 사업부서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지만 1년 단년의 참여 예산제도 내에서는 시민들이 해결방안에 대한 공감 및 합의가 어려움
  - 지역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반복되고 지속되는 문제는 계속 사업으로 유사중복,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으로 새로운 사업 방향의 변화 또는 시도가 모색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런 상황에서 매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반복되고 지속되어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등의 성과를 축적하기 어려운 제도의 구조를 가짐

⟨표 4-19⟩ 참여예산 단계별 참여예산위원회 역할

구분	주민의견 수렴	숙의/공론	확정/공개		
주요 행위자	예산편성-주민(시민) 예산집행-참여예산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		
지원 행위자	참여예산담당자	사업부서 담당자	예산담당자 지방의회		
제약 여건	<ul><li> 주민의 사업계획서의 수준</li><li> 단년도 사업의 제약조건</li><li> 매년 새로운 사업 발굴 압박</li></ul>	<ul><li>사업부서와 제안사업의 정교화</li><li>짧은 숙의 및 공론화 기간</li><li>다부처 연계사업-1개 부서할당</li></ul>	우선순위 간 다른 결과		
참여위 역할					

#### (3) 참여예산 사업계획의 선정과 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

- 참여예산의 사업계획의 제안심사 기준은 광역시별 보유하고 있으나,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음
  - 조례를 기준으로 볼 때, 참여예산 제안심의기준은 네거티브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광역시별 자율적 기준에 의해 사업계획을 선정
  - 참여예산 제안심의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광역시는 대구와 인천이 유일 하고, 내용을 보면 1) 파급효과, 2) 신규사업, 3) 단년도 사업, 4) 기존 경상사업 제외를 규정
  - 사업심사기준에 따를 때, 참여예산의 사업계획서는 1) 신규사업, 2) 1년 간 유효한 단년도 사업의 제약조건

〈표 4-20〉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조례 기준)

조항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심사기준	제12조(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위원 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 한다. 2.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군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5. 기타 국고보조사업, 법정 또는 협약등에 따라 의무적 경비 지출이 요구되는 사업 등은 제외한다.	제16조(제안사업 심사기준) 위원회는 주민 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을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군구의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5.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

○ 광주광역시의 공모사업은 1)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사업 현장 입지의 적정성. 3) 사업지 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가능성. 4) 지역주민 수혜도 등으로 종합적 기준으로 선정(중부일보, 22.3.4일자)

- 제안사업의 선정기준은 제안된 사업계획서를 사업부서에서 1차 검토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의견이 선정기준으로 대체
  - '숙의/공론' 단계에서 사업부서 검토 및 보완의 내용은 사업 적법성(사업 적정성), 사업 적정성(사업 타당성)으로 구성
  - 하지만 이런 사업부서 검토 및 보완은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숙의/공론' 과정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현행 제안사업의 선정기준이 사업부서의 의견이 대체한다면, 사업부서의 검토의견은 구체화 될 필요
- O 서천군의 사업부서 검토 의견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
  - ① 필요성(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 ② 적정성(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거나 선심·낭비성 사업은 아닌가?)
  - ③ 시급성(2022년에 즉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인가?)
  - ④ 실현 가능성(사업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⑤ 파급효과(사업 완료 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가?)
  - ⑥ 보조금 지원사업 여부
  - ⑦ 종합 검토의견(제안자 협의 과정, 종합 검토 의견)
- 사업부서의 검토 의견이 구체화되면 타 사업계획서를 정교화하는데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음
  - '숙의/공론' 단계에서 사업부서 검토 및 보완 구체화되면, 주민참여예산 기구와 지역 시민에게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됨
  - '숙의/공론' 단계에서 사업부서 검토 및 보완은 하나의 사업부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부서가 자기 부서의 근거를 가지고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연결되게 되면 다양한 가능성으로 나타나게 됨
  - 예를 들면, 서천군 사업부서에서 종합 검토 내용으로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주고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 다른 제안에 대한 종합 검토 내용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음, 즉, 현재

개인사업을 위한 식당 개소는 어렵지만, 지역 청년층 대상으로 지역 자원 활용 아이디어창업 지원금 보조사업이 추진이라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 청년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

- 구체화된 사업부서의 검토 의견 및 보완 내용이 지역주민에게 공개의 폭을 넓게 제공 필요
  - 광역시에서는 제안사업의 숫자가 많아서, '숙의/공론' 단계에서 사업부서 검토 및 보완 구체화가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사업부서 입장에서 '주민의견 수렴' 단계에서 사업을 부적합·부적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가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이지만 '숙의/공론' 단계에서 사업부서 검토 및 보완 구체화해야 한다면 통폐합・유사 중복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사업 부서 검토 및 보완 구체화로 처리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어서 사업부서의 통폐합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검토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사업부서 '숙의/공론' 단계에서 사업부서 검토 및 보완 구체화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시민이 관심사가 높은 사안에 관한 정보를 공개 하는 효과와 함께 사업부서 '숙의/공론' 단계에서 사업부서 검토 및 보완 구체화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3. 참여예산제 관련자들의 인식조사

# 1) 연구 방법

- O 설문조사
  - 대상: 광주광역시 공무원(본청: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 구·동 공무원) 및 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기간: 7월 초 8월 중순
  - 방법: 1) 선행연구(보고서 및 논문) 등을 포함 참여예산제도 관련 조사의 조사표를 검토 후 연구진이 설문 초안 작성, 2) 전문가 자문, 3) 공무원 및

- 참여예산 위원 검토, 4) 사전테스트 실시, 5) 설문 실시
- 내용: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및 절차에 대한 인식,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인식, 주민참여제도의 효과, 활성화 필요요인에 대한 인식
- 응답률: 본청 및 구·동 공무원으로부터 66부,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부터 63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음
- 응답자의 특성은 아래 표와 같음

구 분 응답자(명) 구성비(%) 기획/예산부서 5 3.9% 공무원 사업부서 61 47.3% 소속 시민참여예산위원회 63 48.8% 소계 129 100% 광역시 본청 29 43.9% 구 20 30.3% 근무지 (공무원) 17 동 25.8% 소계 66 100%

**〈표 4-21〉** 설문 응답자의 특성

# 2) 설문조사 결과

○ 예산·사업 부서장의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의지

오타 내용	=	공무원	주민참여예산위원		
응답 내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2	3.0%	9	14.3%	
그렇지 않다	12	18.2%	7	11.1%	
그렇다	41	62.1%	27	42.9%	
매우 그렇다	11	16.7%	20	31.7%	
 계	66	100.0%	63	100.0%	
평균(표준편차)		2.92(0.69)		2.92(1.00)	

〈표 4-22〉 예산·사업 부서장의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의지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본인이 속한 부서의 장이 주민참여예산 제도 실시 및 수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공무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공무원의 경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응이 78.8%(그렇다 62.1%, 매우 그렇다 16.7%)로 부정적인 반응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경우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응이 74.6%로 공무 원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부정적인 인식(25.4%)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음

#### O 시민 공모사업 계획서의 수준

OEF 188	-	공무원	시민참여예산위원		
응답 내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매우 부족하다	6	9.1%	0	0%	
부족하다	24	36.4%	8	12.9%	
보통이다	22	33.3%	24	38.7%	
우수하다	13	19.7%	26	41.9%	
매우 우수하다	1	1.5%	4	6.4%	
 계	66	100.0%	62	100.0%	
평균(표준편차)		2.68(0.95)			

⟨표 4-23⟩ 시민 공모사업 계획서의 수준

- 시정참여형과 같은 공모사업 시. 시민이나 단체에 의해 작성되어 제출되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공무원들은 부족하다는 인식(45.5%, 매우 부족 9.1%와 부족하다 36.4%)이 보통(33.3%)이나 우수(21.2%)하다는 인식의 비율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경우 시민에 의해 제안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우수하다는 인식(48.3%)이 보통(38.7%) 또는 부족(12.9%)하다는 인식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공모사업을 위해 제출되는 사업계획서 수준에 대해 공무 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의미함

- 공무원의 경우 계획서의 사업의 법적·제도적 실행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민에 의해 제시된 사업이 실제 사업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계획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O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현재)

공무원 시민참여예산위원 응답 내용 비율 사례수 평균 사례수 62 6.47 5.21 민원성사업 58 시숙원 사업 61 4.15 57 4.11 이해관계 관련사업 4.54 3.57 59 56 구·동 필요사업 62 4.77 57 4.96 새로운 사업 59 2.51 56 3.27 사회적약자 지원사업 59 3.17 58 4.38 청소년/청년 관련 사업 59 2.51 3.25 57

⟨표 4-24⟩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현재)

- 위의 〈표 4-24〉는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운영되는 사업의 특성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우선순위(1점-7점)를 통해 알아본 결과로서 평균 값이 높을수록 빈도가 높은 사업으로 응답자가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 공무원들의 경우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 민원성 사업(6.47) 이라는 인식을 가장 높게 가지고 있으며 구 또는 동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4.77), 주민의 이해관계 관련사업(4.54), 시숙원사업(4.15)이 뒤를 잇고 있음
- 반면, 공무원들은 운영 중인 시민 제안사업이 사회적 약자 지원(3.17), 청소년/청년 관련 사업(2.51), 새로운 사업(2.51)과 관련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은 선정되어 운영중인 시민공모사업에서 민원성 사업(5.21)이 차지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구·동 필요 사업(4.96), 사회적약자 지원사업(4.38), 시숙원 사업(4.11)순으로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선정된 사업 중 이해관계 관련사업(3.57), 새로운 사업(3.27), 청소년 /청년 관련 사업(3.25)의 경우 시민참여예산위원들에게 인식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됨
- 공무원과 시민참여예산위원 모두 민원성 사업과 구 또는 동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그 외의 다른 특성을 가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식차이가 존재함
- O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미래)

OFF 1110	3		시민참여예산위원	
응답 내용	사례수	평균	사례수	비율
민원성사업	58	3.14	51	3.94
시숙원 사업	58	4.81	53	3.38
이해관계 관련사업	57	1.96	51	2.9
구·동 필요사업	57	4.81	53	4.75
새로운 사업	59	4.14	52	4.17
사회적약자 지원사업	57	4.75	52	4.77
청소년/청년 관련 사업	59	4.63	51	4.33

〈표 4-25〉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미래)

- 〈표 4-25〉는 시민공모를 통해 향후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우선순위(1점-7점)를 통해 알아본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공무원들의 경우 시숙원사업(4.81) 및 구 또는 동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4.81)이 향후 시민제안 사업 중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적약자 지원(4.75), 청소년/청년 관련 사업(4.63), 새로운 사업(4.14)이 뒤를 잇고 있음
- 이에 반해, 사업선정에 있어 민원성 사업(3.14)과 이해관계 관련사업 (1.96)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은 사회적약자 지원사업(4.77), 구·동 필요사업

- (4.75), 청소년/청년 관련 사업(4.33)이 향후 우선적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새로운사업(4.17), 민원성사업(3.94), 시숙원 사업(3.38) 및 이해관계 관련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위원들에게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O 예산숙의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응답 내용	=	당무원	시민참여예산위원		
등급 세 <del>용</del>	빈도수	평균	사례수	비율	
충분한 숙의 시간	65	3.91	53	3.66	
참여위원의 전문성	65	4.00	56	4.57	
시청과의 협의 및 조정	65	4.18	54	3.56	
공정성	63	4.02	56	4.02	
과정의 투명성(공개성)	63	3.98	54	4.02	
 참여율	63	4.05	56	3.86	
계획서의 완성도	63	4.05	54	3.89	
 예산기관 설득	63	3.68	54	3.63	

⟨표 4-26⟩ 예산숙의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63

의회와의 관계

- 시민참여예산 숙의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참여예산 위원의 인식은 〈표 4-26〉에 제시되어 있음

3.71

55

3.51

- 공무원들은 시민참여예산의 숙의과정이 실질적으로 충실히 이루어지기 위해 고려되어야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시청과의 협의 및 조정(4.18), 숙의 과정에서 시민참여율(4.05), 제안된 계획서의 완성도(4.05), 숙의과정의 공정성(4.02), 참여위원의 전문성(4.00) 순으로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음
- 이어서, 예산숙의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과정의 투명성(3.98), 충분한 숙의시간(3.91), 의회와의 관계(3.71), 예산기관 설득(3.68)의 정도로 중요 요소를 인식하고 있음

<sup>\*</sup> 중요도에 대한 측정은 1점(낮음) - 5점(높음)으로 이루어짐

-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은 예산숙의 과정에서 참여위원의 전문성(4.57)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공정성(4.02) 및 과정의 투명성(4.02), 계획 서의 완성도(3.89), 참여율(3.86)이 뒤를 잇고 있음
- 한편, 충분한 숙의시간(3.66), 예산기관 설득(3.63), 시청과의 협의 및 조정(3.56), 의회와의 관계(3.51)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O 사업선정에 중요한 요소

〈표 4-27〉 사업선정에 중요한 요소

응답 내용	=	공무원	시민참여예산위원	
5월 세 <del>8</del>	빈도수	평균	사례수	비율
사업의 실현가능성	65	6.97	60	6.38
사업의 참신성	62	4.23	59	0.54
사업의 수혜대상	65	5.91	58	5.66
사업의 시급성	65	6.48	59	5.95
사업예산액	61	4.13	58	3.91
이해관계 조정	61	3.38	58	2.59
시민참여예산위원의 관심	61	2.82	59	3.53
시(구)의회의원의 관심	61	2.23	59	2.63

- \* 사업선정에 대한 중요 요소는 우선순위(1위-7위) 기입에 따라 역순(7점-1점)으로 재코딩
  - 〈표 4-27〉는 시민참여예산 사업선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참여예산위원의 인식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공무원들은 사업선정에 있어 사업의 실현가능성(6.97)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사업의 시급성(6.48), 사업 수혜대상(5.91)을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음
  - 이어서. 사업의 참신성(4.23), 사업 배분 가능한 예산액(4.13), 이해관계 조정(3,38), 시민참여예산위원의 관심(2,82), 시(구)의회의원의 관심(2,23) 순으로 중요 요소를 인식하고 있음

- 시민참여예산위원의 경우 공무원과 유사하게 사업의 실현가능성(6.38), 사업의 시급성(5.95), 사업의 수혜대상(5.66)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음
- 반면, 시민참여예산위원의 경우 공무원에 비해 시민참여예산위원의 관심 (3.53)이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나 사업의 참신성(0.54)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음
- O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

⟨표 4-28⟩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

응답 내용		공무원		시민참여예산위원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시민참여보장	66	3.32	61	3.28
공모접수	충분한 정보제공	66	3.27	61	3.11
	충분한 컨설팅 기회	66	3.04	61	3.23
	사업부서의 수정및검토	66	3.21	60	3.25
	사회적약자 이익반영	66	3.12	61	3.16
	부서 간 협조	66	3.11	61	3.23
숙의결정단 계	활동시간의 충분성	66	2.84	61	3.11
. "	예산의 충분성	66	2.8	60	2.97
	의회의 예산안 협조적 심의·의결	66	2.7	61	3.18
	다양한 경로 통한 사업공모·선정	66	3.14	61	3.13
지하나다기	집행과정에서 시민참여	66	3.09	61	3.07
집행평가	사업 관리통제·평가 시민참여	65	3.09	61	3.05
역량강화	공무원 대상 시민참여예산교육	66	2.86	61	3.13
	시민대상 교육기회 제공	66	2.93	61	3.13
이시조하	전반적인 운영평가	66	3.02	61	3.18
인식종합	제도의 필요성 인식	66	2.77	61	3.54

<sup>\*</sup>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은 4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로 조사되었음

- 위의 〈표 4-28〉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참여예산위원의 과정별 인식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음
- 공모접수 단계에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지, 사업공모에 대해 정보가 제공되는지, 컨설팅 기회가 주어지는지와 관련하여 공무원과 시민참여 예산위원들의 경우 긍정적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숙의결정단계에서 제안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수정 및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사업선정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이익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지, 시청 내 부서 간 협조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3점 이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다만, 공무원들의 경우 숙의를 위한 시민 및 시민참여예산위원의 활동시간.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의 충분성, 의회의 예산안에 대한 협조 등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2점대)가 확인되었음
- 사업 집행과정에서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는지, 사업의 관리 및 통제, 평가 과정에서 시민참여 기회가 주어지는지와 관련한 집행평가 항목의 경우 3점대 초반으로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공무원들의 경우 공무원 및 시민 대상 교육기회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 정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되었음
-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한 공무원(3.02)과 시민참여 예산위원(3.18)의 전반적인 인식은 긍정 쪽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제도의 필요성 측면에서 공무원과 시민참여예산 위원 모두 긍정적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무원(2.77)들은 시민참여 예산위원(3.54)보다 긍정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 사업유형의 적절성

⟨표 4-29⟩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 사업유형의 적절성

11이 이렇	공무원		시민참여예산위원	
사업 유형	사례수	평균	사례수	비율
전체	52	2.87	56	3.13
시정참여형	65	2.86	60	3.12
 정책연구형	66	2.88	60	2.97
지역참여형	66	2.83	60	3.22
동단위계획형	66	2.63	60	3.17

- \* 사업유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4점척도로 측정(1.매우 부적절하다, 2. 부적절하다, 3. 적절하다, 4. 매우 적절하다)
  - 광주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시민참여예산 사업유형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는 위 〈표 4-29〉에 제시되어 있음
  - 공무원의 경우 전체 사업유형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2.87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정참여형(2.86), 정책연구형(2.88), 지역참여형(2.83)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다만, 동단위계획형(2.63)의 경우 타 유형에 비해 긍정적 인식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시민참여예산위원의 경우, 운영 중인 사업유형에 대해 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은 타 사업 유형에 비해 정책연구형 사업(2.97)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중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규모의 적절성

⟨표 4-30⟩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규모의 적절성

내어 오취	공무원		시민참여예산위원	
사업 유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매우 부족하다	5	7.7%	9	14.5%
부족하다	9	13.8%	17	27.4%
적절하다	40	61.5%	36	58.1%
과도하다	9	13.8%	0	0.0%
매우과도하다	2	3.1%	0	0.0%
계	65	100%	62	100%

- 〈표 4-30〉은 2021년과 2022년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 규모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참여예산위원의 인식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음
- 공무원의 경우 예산규모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61.5%로 가장 높았으며 부족하다(13.8%) 및 과도하다(13.8%)고 인식하는 비중이 유사하게 나타났음
- 매우 부족(7.7%)하다는 인식과 매우 과도하다(3.1%)는 인식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반면, 시민참여예산위원의 경우 51.8%가 예산 규모가 적절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위원의 경우 부족(27.4%)하거나 매우 부족(14.5%)한 것으로 예산 규모를 인식하고 있음
- 시민참여예산위원의 경우 예산 규모가 과도하다는 응답은 존재하지 않음



#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제1절 광주형 시민참여예산제도 모델 발굴의 방향성

제2절 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방안

# 제5장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제1절 광주형 시민참여예산제도 모델 발굴의 방향성

#### 1. 광주형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 명확화

- 광주광역시의 참여예산제도는 누구를 위한 참여예산제도를 구체화하고 있지 않고. 기능적 목적을 명시
  - 조례 제1조는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
- 브라질의 도입당시와 우리나라의 제도 도입 당시를 비교할 때, 브라질 사례 처럼 삶의 정치적 이념과 투쟁의 일환으로 도입하지 않고, 재정운영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
  - 좋은 지방거버넌스(good local governance)'의 한 형태로서 예산과정 전반에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고, 과정적·절차적 측면에서 지방 예산과정에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광주광역시의 참여예산제도는 1) 관료중심의 예산효율성을 제고, 2) 주민과 협력을 통한 예산효율성과 참여성을 제고, 3) 주민참여 주도의 예산 책임성을 강화를 위한 선택 필요
  - 현행 제도 내에서는 주민협의형 -> 민관협치형 및 주민주도형으로 단계적 방향성 필요

〈표 5-1〉 참여예산제도의 유형

구분	의견수렴형	주민협의형	민관협치형	주민주도형
주민참여 수준	정보제공과 이를 통한 설득	협의와 협력	협동과 권한위임	(주민에 의한) 통제
예산편성권의 공유수준	관료중심적 의사결정	주민협의를 통한 관료적 의사결정	민·관 공동의사결정	주민중심적 의사결정
주민참여과정의 주도자	관료	관료+주민참여조직	주민참여조직	주민참여조직
주민참여조직	없음	제도화(단일조직) 소극적·제한된 역할부여	제도화(단원적 조직) 적극적·제한된 역할부여	제도화(다원적 조직조직) 적극적・포괄적 역할부여

자료: (곽채기. 2011; 서정섭 외. 2017: 25 재인용)

#### 2. 광주형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단계적 제도 개선방향

- 현재 광주광역시의 참여예산제도 상태를 참여성과 실효성이 낮은 상태로 전제할 때, 향후 방향은 참여확대보다는 현행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실효성이 높은 제도개선의 접근 필요
  - 관료와 시민중심의 주민협의형 내에서 제도 설계 수립(현상태)
  - 시민의 참여제안서를 품질 제고를 위한 참여확대 전략 및 숙의/공론화 내실화를 위한 제도 설계 구축(주민협의형)
  - 현행 제도 내에서 참여예산 제안의 실효성을 높인 후에,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민관협치형→주민주도형)

〈표 5-2〉 광주형 시민참여예산제도 모델 발굴을 위한 접근

		실효성		
		고	저	
참여성	고	③ 민관협치형-)주민주도형		
(민주성) 	저	②주민협의형	①현상태	

### 3. 도시형 광역모델의 운영방향

- 도시형 광역모델을 위한 1) 기초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 2)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광역 단위의 지원 방향
  - 광역단위로 주민참여예산 홍보를 실시하는 방안, 광역자치단체 예산으로 기초자치단체에 퍼실리테이터를 지원 방향
  - 소규모사업의 경우 기초단체로, 대규모 사업의 경우 광역단체 소관

⟨표 5-3⟩ 도시형 광역단체 운영방향

구분	운영 방식	운영을 위한 고려 사항
도시형 광역단체	<ul> <li>기초단체와의 역할 분담</li> <li>기초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광역 단위의 지원 노력 병행</li> </ul>	<ul> <li>(기초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 광역단체의 공모사업은 광역 단위 사업이 주를 이뤄야 하나, 특정 지역의 숙원사업이 주로 신청. 따라서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와의 역할 분담이 필요</li> <li>(기초자치단체 지원)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를 지원함 으로써 행정의 중복성을 방지하고 예산의 비효율을 최소화 할 수 있음</li> </ul>

자료: 서정섭 외(2017: 104-6)의 내용을 요약 및 재정리

# 제2절 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방안

# 1. big-data 활용한 기존 제안사업 정보 제공

- 광주광역시의 참여예산제도는 1) 주민들의 참여가 증가하지 않고, 2) 주민들이 공모제안서의 내용이 추상적이며, 3) 주민들의 역할이 제안서 제출이후에 명확하지 않다는 점임
  - 참여예산의 효능 중의 하나는 관료들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정사업을 간과할 경우에, 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제안될 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반면, 참여예산 제안서가 추상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적을 경우에는 사업 부서 및 담당자들은 추가적인 업무로 인식하여 기계적인 대응으로 참여 예산사업이 정교화 되기 어려움
- 대구광역시는 주민참여예산에서는 구·군별 예산사업 현황을 데이터로 축적 하여, 우수사례로 선정



〈그림 5-1〉 대구광역시 예산사업 현황 데이터 활용 사례

- 기존 제안사업 중에서 사업부서의 선정의견이 첨부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사업부서의 선정의견의 내용을 데이터화하여, 공개할 경우 시민들 에게는 제안서 작성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
  - 홈페이지에 누적된 제안사업은 다음 사업을 제안하는 시민들에게 주제 선정, 사업구체화의 정보제공 기회
  - 기존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이 다수 반복되고 지속하여 제안된다면, 기존 계속사업의 사업량을 확대 또는 사업내용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율과 효과를 점검하는 계기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 '주민의견 수렴' 경로를 연계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 정보, 지식 등을 '숙의/공론' 과정의 검토, 보완, 심의에 활용하여 주민참여예산 기구 활동의 객관성과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내용들을 사업부서와 공유하면서 사업부서의 정책과 사업의 근거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활용 가능
  - 일본 돗토리현의 경우 예산과정에서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참여를 반영하기 어려운 광역자치단체로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주민참여 방식보다는 결재단계별로 각 사업의 예산채택여부와 이유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여 예산편성 과정 및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정 보공개 활동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설계하고 있음(이자성, 2008; 서정섭 외, 2018)

# 2.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주제 선정

- 현행 참여예산제도의 주어진 시간 내에 시민들이 제안하는 제안서를 수렴해서, 숙의와 공론의 과정을 통해서 선정하는 절차
  -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이 제안하는 건수가 줄어들고, 관심이 적어질 경우에는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제안서를 정교화 해야 하는 악순화에 빠질 염려 있음

- 시민-관료의 양방향 사업주제 선정 경로로 확대할 경우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 가능
-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청원 시스템"과 같이, 온라인 상에서 사업주제를 두고, 일정기간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준이 통과되면 시민참여예산 사업 계획서로 선정하여 정교화 작업 추진
- 참여예산제도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민주주의 서울」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사례로 공론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민참여의 효능감 제고한 사례

#### • 서울시「민주주의 서울」사례

- 사업정의: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제안 중 공론과 민관숙의를 통해 정책화되어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
- 편성대상: 500명 이상 공감하여 공론이 운영된 시민제안 중 공론장에 30일간 5,000명 이상 참여하여 민관숙의를 거쳐 도출된 정책
- 2020년 예산한도(2021년 실행): 광역협치형 예산규모(100억 원) 내에서 추진
- 타 서울시 사업유형과의 차이점

구분	광역참여형 및 협치형	「민주주의 서울」연계
주체	<ul> <li>제안(제안자) 중심</li> <li>민관 숙의 이후에도 제안자가 철회하면 제안 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음</li> </ul>	공론 중심     공론 이후에 제안자가 철회하더라도 공론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 가능
심사	<ul> <li>민관예산협의회 심사(전문가+참여예산위원회 위원)</li> <li>2단계 과정의 심사를 통과한 사업만 시민 투표(엠보팅) 실시</li> </ul>	<ul> <li>의제선정단 논의(외제기획 시민그룹, 의제 선정 시민그룹)</li> <li>500명 이상 공감한 시민제안은 2차례의 의제선정단(기획단, 선정단) 검토 후에 공론 여부 결정</li> </ul>
일반시민 참여	<ul><li>시민투표(엠보팅) 실시</li><li>특표수 하위 사업 5~30%(예산금액 기준) 탈락</li></ul>	온·오프라인 공론 실시     공론장에 30일 간 5,000명 이상 참여 및 과반수 찬성 필요

- 「민주주의 서울」 단계별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음



#### 3.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의 연계 확대 필요

-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지자체의 참여예산제도는 형식적으로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을 연계해 놓은 제도 설계로 운영의 한계
  -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예산편성단계에서 예산집행을 포함한 예산 전 과정에서 참여예산의 기회가 부여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의 한계
  - 현행 제도 내에서, 참여예산 제안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예산집행의 모니터링 및 감시단은 실효성이 낮음. 왜냐하면 계속성사업의 경우에는 집행이 다음연도 집행에 영향을 줄수 있으나, 단년도사업의 경우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임
  - 현행 집행단계의 활동은 참여예산제도의 확대를 목표로 설계된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예산 낭비 모니터링, 감시의 활동을 참여예산으로 확대하여 실효성이 낮음
- O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의 연계 확대를 위해서는,
  - 조례에서 1) 참여예산제 운영의 목적에 "재정투명성"에 "재정책임성"을 추가하고, 2)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사기준을 신설

〈표 5-4〉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조례 기준)

조항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
목적 (개정)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예산편성 <b>및 예산집행</b> 등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b>예산의 책임성</b> 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6.〉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신설)	제12조(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군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을 심사할 수 있다 5. 기타 국고보조사업, 법정 또는 협약 등에 따라 의무적 경비 지출이 요구되는 사업 등은 제외한다.

### 4. 그 외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 참여예산제도가 10여 년이 운영된 시점에서, 제도 설계, 운영, 결과의 측면 에서 구조화된 정체현상
  - 활성화의 저해요인하는 현상은 1) 소규모 공모(제안)사업 중심, 2) 낮은 주민참여, 3) 참여예산의 범위, 수준, 영향력 축소, 4) 숙의/공론의 통로를 통한 주민간 소통 공간 부족, 5) 참여예산의 주민 역량 부족 및 역량 강화 기회 미흡, 6) 지자체의 제도운영의 다양성 부족, 7) 참여예산 운영 건 및 성과의 지역 간 차이를 포함

〈표 5-5〉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가치	주요 쟁점	개선방안
민주성 /책임성	<ul> <li>예산과정 중 어떤 단계와 수준에 참여할지의 문제</li> <li>의견 수렴 및 제시, 예산 관여 및 영향력 행사, 예산 의사결정</li> <li>참여예산의 범위와 대상에 관한 문제</li> <li>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배려와 포용</li> <li>재분배 성격 예산 이슈 포함 문제</li> </ul>	참여범위의 확대     사업규모 확대 및 대상사업 다양화     주민자치제도와 연계 강화
대표성 /전문성	<ul> <li>누가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과정에 참여(주민 대표성)</li> <li>대표성 없는 참여, 불평등 참여 문제</li> <li>선호의 대표성</li> <li>참여자 전문성 문제와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성</li> <li>주민대표기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구성, 기능, 권한 정당성</li> <li>낮은 주민 참여율</li> <li>시민단체 등 주도 주체의 영향 공정성 문제</li> </ul>	<ul><li>참여예산위원의 전문성 확보</li><li>분과위원회의 운영활성화</li><li>참여예산교육 확대</li></ul>
숙의성 /공론성	<ul> <li>참여자의 자기이익 추구와 공동체 이익 반영 괴리 문제</li> <li>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관련 공정성 문제</li> <li>낮고 약한 주민참여, 높고 강한 이익집단 참여의 위험성</li> </ul>	● 이겨스력이 저워져 FI다서 하나
투명성	(지역) 언론의 지속적 관심 유발     시민사회의 지방의회에 대한 과도한 압력 행사의 위험성	<ul><li>정보공개 활성화</li><li>홍보 강화</li></ul>
효율성	<ul> <li>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인식 및 태도 변화</li> <li>제도적, 형식적 관계와 실질적 관계 설정 문제</li> <li>지방의회의 부정적·소극적 시각 및 행태 문제</li> <li>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직·간접적 비용(참여비용)</li> </ul>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확보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성과평가 및 환류

출처: 한국지방재정학회(2020); 류영아(2018); 서정섭외(2018;2019), 이미애(2019) 재구성

○ 참여예산제도는 공공조직에서 운영하는 타 제도와 마찬가지로 운영주체 (지자체)와 참여주체(시민)가 분리되어 제도의 지속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유인체계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

# 참고문헌

- 류영아. (2019).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입법·정책보고서 제27호, 국회입법조사처. 1-74
- 류춘호. (2017). 지방정부의 예산성과금 제도와 예산낭비감시제도의 운영실태와 정책 방향.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26
- 민현정. (2018). 시민참여예산제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광주전남연구원
- 박광우. (200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에 관한 연구. 광주: 전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1-92
- 서정섭, 김성찬, 윤태섭, 홍근석, & 곽채기. (2017).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132
- 서정섭, & 이장욱. (2018).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산제 발전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1-208
- 서정섭 외. (2019). 주민주도참여예산제 모델개발(I)-주민예산서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 서정섭 외. (2020). 주민주도참여예산제 모델개발(II)-주민예산서 활용·성과지표 개발, 주민투표 방안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오영민, & 신헌태. (2018). 다중 행정가치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지방자치연구, 20(3), 25-52
- 윤성일, & 임동완. (2016). 참여기구와 참여수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과 시사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6), 40-53
- 윤태환. (2010).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애. (2018).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연구원, 1-92한국지방재정학회. (2020).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방안. 행정안전부

Sintomer, Y., Herzberg, C., & Röcke, A. (2008). Participatory budgeting in Europe: Potentials and challeng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2(1), 164-178

# 부록 : 설문지

#### :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공무원 및 시민참여예산위원의 적극적 참여 유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을 담당하시거나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시민참여예산 위원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성과 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공무원 및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인식은 제도의 민주적 운영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시민참여예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들기 위한 개선방안 제시하는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해당 설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문 내용은 통계 및 연구 용도로만 활용할 예정이며 개별 응답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그 비밀이 보장되오니 솔직한 응답 부탁드립니다.
- 다시 한 번, 귀한 시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신 데 감사드리며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22년 7월

조사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문의처	재정분권연구센터 김윤승(033-769-9876 / yskim@krila.re.kr) 재정분석연구센터장 전성만(033-769-9879 / sungmanjun@krila.re.kr)			

## 질문 1. 시의 (사업 또는 예산)부서의 장은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질문 2. 귀하께서 판단하시기에 시민 제안자에 의해 작성된 시민참여예산사업 계획서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⑤ 매우 우수하다
(제안 불가)	(컨설팅/수정 필요)	(컨설팅/보완 필요)	(경미한 보완필요)	(바로 제안가능)

질문 3. 귀하께서 인식하시기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 사업에는 어떤 사업(현재 사업)이 많으며 향후(미래 사업)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우선순위 기입)?

사업 특성	예시	현재 사업	미래 사업
민원성 사업	5		
시 숙원 사업	1		
이해관계 관련 사업	3		
구(또는 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업	2		
새로운 사업	4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	6		
청소년/청년 관련 사업	7		

질문 4.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시민예산위원회의 예산 숙의 과정에서 중요한 과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예산 숙의 과정(중요요소)	1	2	3	4	5
	(낮음)	<del></del>		$\longrightarrow$	(높음)
충분한 숙의 시간					
참여 위원의 전문성					
시청(사업부서)과의 협의 및 조정					
- - 공정성					
과정의 투명성(공개성)					
참여율					
계획서의 완성도(컨설팅 및 보완가능성)					
예산기관 설득					
의회와의 관계					

질문 5. 귀하께서 인식하시기에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우선순위 기입)?

선정의 중요한 요소	예시	우선순위
제안사업의 실현가능성	1	
제안사업의 참신성	2	
제안사업의 수혜대상(ex: 일반시민, 아동 등)	3	
제안사업의 시급성	4	
할당된 사업예산액(한도 또는 실링)	5	
이해관계자와의 이해관계 조정	6	
시민참여예산위원의 관심	7	
시(구)의회의원의 관심	8	

질문 6. 시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번호	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요인	매우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1	시민의 관심 및 참여					
2	시민의 전문성					
3	공무원의 적극적 태도					
4	자치단체장의 관심					
5	시민참여예산위원의 전문성					
6	지방의회의 협조					
7	지속적 예산참여에 대한 교육					
8	정보공개					
9	사업공모(계획서 등) 컨설팅					
10	사업선정을 위한 객관적 심의 기준					
11	참여예산위원의 역할 강화					
12	시민의 예산 참여 권한 확대					
13	시민참여예산 재원의 확대					
14	시민참여예산 참여자에 대한 활동 비용지원					
15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					
16	우수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질문 7. 시민참여예산제도 절차 측면에서 다음 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단계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인식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공모	시민들의 적극 참여 보장				
접수	시민들에게 <b>사업공모 충분한 정보제공 여부</b>				
단계	시민들에게 제안사업의 <b>충분한 컨설팅 기회</b>				
	사업부서와 제안사업의 충분한 수정 및 검토				
	시민참여예산 과정에 <b>사회적 약자의 이익 반영</b>				
	참여예산제도 운영의 <b>부서 간 협조</b>				
숙의 결정	시민과 시민참여예산위원이 <b>활동하기 위한 시간의 충분성</b>				
단계	시민제안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의 충분성				
	시의회가 협조적으로 예산안을 심의·의결				
	다양한 경로(민관협치기구, 온라인 매체, 공청회 등)로 제시된 제안의 사업선정 반영 여부				
집행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충분 보장				
평가	집행된 사업에 대한 <b>관리통제 및 평가의 충분성</b>				
역량	사업부서 <b>공무원의 참여예산제도(취지 및 운영절차)에 대한</b> 설명(교육)의 충분성				
강화	시민들에게 시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b>교육 기회 제공의 충분성</b>				
인식	귀하가 근무하는 자치단체의 시민참여예산제도의 <b>전반적인 운영</b>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 	귀하가 판단하기에 근무하는 자치단체에 시민참여 <b>예산제도 운영이 필요</b>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록 : 설문지

# 질문 8. 2022년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부록 표 1〉시민참여예산의 4가지 유형(2022년)

시정참여형	정책연구형	지역참여형	동단위계획형
<ul><li>시소관사업</li><li>단년(5억이하)</li><li>배정예산: 90억</li></ul>	<ul><li>청년정책 사업</li><li>10억</li></ul>	<ul><li>구소관사업</li><li>단년(5천이하)</li><li>20억</li></ul>	시민자치회 및 운영동 대상     자치구별(1억)

	① 매우 부적절하다	② 부적절하다	③ 적절하다	④ 매우 적절하다
전체				
시정참여형				
정책연구형				
지역참여형				
동단위계획형				

## 질문 9. 2021-2022년 시민참여예산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록 표 2〉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 규모

	2021	2022
참여예산목표액	125억 원	125억 원
실제 예산 반영액	68억 원	58억 원
실제 예산 반영액	68억 원	58억 원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적절하다	④ 과도하다	⑤ 매우 과도하다

질문 10. 시민참여예산제도 실시로 인한 효과 측면에서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예산제도의 효과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영의 <b>투명성</b> 향상에 기여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영의 <b>신뢰도</b> 향상에 기여한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대한 <b>시민참여 활성화</b> 에 기여한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대한 <b>시민참여의 형식화</b> 를 초래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영의 <b>민주성 강화</b> 에 기여한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b>형평성을 제고</b> 한다.				
예산 결정 및 집행을 위한 <b>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b> 한다.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켜 <b>행정 비효율성을 초래</b> 한다.				
예산 배분에 있어 지역 내 <b>집단 간 갈등을 초래</b> 한다.				
<b>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고 억제</b> 하는데 기여한다.				
지자체의 <b>예산 수요 증가</b> 에 기여한다.				
시민이 속한 <b>지역에 대한 관심 증가</b> 에 기여한다.				
지자체와 시민사이의 <b>파트너쉽 강화</b> 에 기여한다.				
시민예산참여위원회 <b>위원의 역량을 강화</b> 시킨다.				

질문 11. 귀하가 속한 부서(참여예산위원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시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적극성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적극성 수준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또는 담당 공무원은) 참여예산제도 사업 과정에서 시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우리(또는 담당) 부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시민참여예산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도록 격려한다.					
우리(또는 담당) 부서는 시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시민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나는(또는 담당 공무원은) 참여예산제도 사업 심사나 추진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정이나 기존의 관행을 고수하지 않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한다.					
우리(또는 담당) 부서는 제도 운영 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우리(또는 담당) 부서는 시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우리우리(또는 담당) 부서는 시민참여예산 관련 업무 담당자의 재량권이 높은 편이다.					
우리 자치단체는 시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업무를 적극적 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또는 담당) 부서에 배당된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집행의 전반적 과정은 시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편이다.					
우리(또는 담당) 부서에서 집행된 시민참여예산사업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질문 12.	귀하의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의견을 남고예산, 절차 등의 문제점 또는 개선 아이디어	모,

# 〈응답자 일반사항〉

기본 Q1) 귀하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① 기획/예산부서	② 사업부서 (안전,여성복지, 환경, 교통, 도시재생 등)	③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기본 Q2)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직급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공무원인 경우에만 해당)

① 광역시 본청	② 구	③ 동

# 기본 Q3) 귀하의 연령과 근무연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연령	②−1 근무연수 (공무원만 해당)	②-2 현재업무 담당기간 (참여예산위원의 경우 위원 활동기간)
만 세	년	개월

# 기본 Q4)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